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8. 5. 23.(수),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의원 : 전영우,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우경식,
이상돈, 이상석, 이유미, 이정, 최종희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공개)
2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전통수상체험사업	(공개)
3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공원 조성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식만~사상간 도로 노선 승인 및 시추조사	(공개)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공개)
6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7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8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9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0	「가지산 칠쭉나무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1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가야역사탐방로 조성	(공개)
12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	(공개)
13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검토사항】

15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공개)
----	----------------------------	------

【보고사항】

16	2018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보고	(공개)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53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05-01

1.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8. 1. 9.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신청서 제출(전라북도→문화재청)
 - '18. 1. 11. 지정현지조사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前문화재위원)
 - '18. 1. 24.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명승지정 검토
 - '18. 2. 9 ~ 3. 8. 명승지정 예고
 - '18. 4. 12. 명승지정 예고 중 지정반대 의견서 및 구역조정(안) 제출(**→***)
 - * 사유재산권 침해 등(75필지 중 19필지, 소유자 133명 중 20명(서면접수))
- '18. 4. 3. 군산시 주최 주민설명회(토지소유자 등 40여명 참석)
- '18. 5. 11. 지정반대의견 검토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한문: 群山 仙遊島 望主峰 一圓)
영문MangJubong Peak and Surroundings in Seonyudo Island, Gunsan)
- 지정종별 : 명승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등
- 문화재구역 : 174,459㎡(75필지)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 지정근거 : 선유도 망주봉 일원의 낙조 경관은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3. 가에 해당됨)

○ 지정 가치

- 군산 앞바다의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을 고군산군도라한다. 고군산군도 중 섬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하여 부르게 된 선유도(舊 군산도)의 망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여 서해의 낙조기관(落照奇觀)중 으뜸으로 저명한 경관을 형성하여 명승적 가치가 높음.
- 옛날 억울하게 유배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 하여 붙여진 망주봉은 선유 8경 중 6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이며, 솔섬에서는 비가 오면 망주봉 정상에서 암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어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
 - * 6경 : 망주봉, 선유낙조, 삼도귀범(앞산섬, 주산섬, 장구섬의 세섬이 귀향하는 범선을 닮음), 명사십리(선유도 해수욕장 모래사장), 무산12봉(섬 12개가 중국의 명산을 닮음), 평사낙안(모래톱이 기러기가 땅에 내려앉은 형상)
-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공이 편찬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망주봉에는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현존하고,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지정 2017.4.7.)」으로 지정된 곳에는 송나라 사신을 영접 행사하던 송산행궁(객관), 군산정(정자), 자복사(사찰)의 터가 남아 있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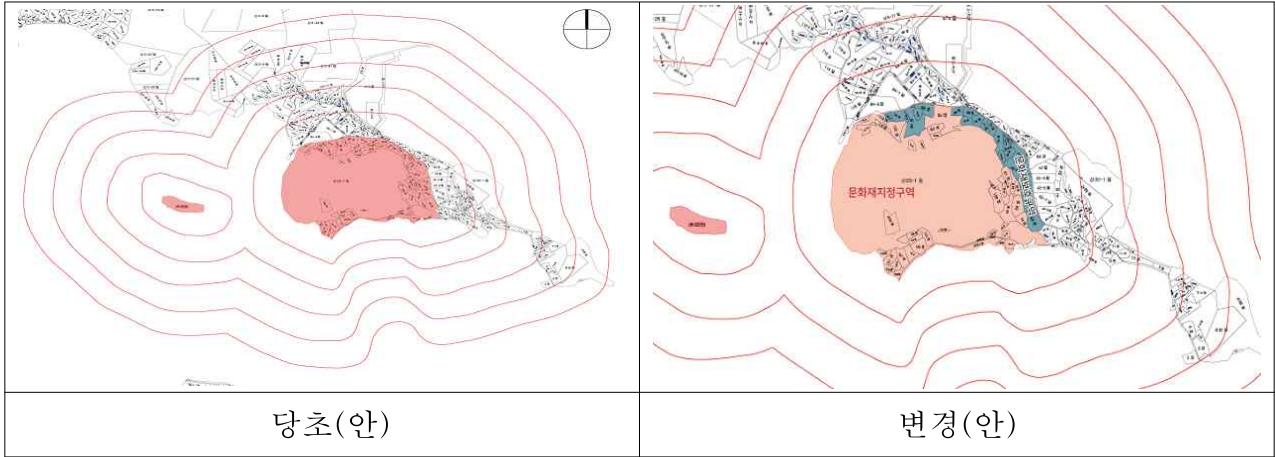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 선유낙조로 대표되는 고군산도의 낙조의 대표적 조망지점으로 망주봉은 경관구도의 탁월함 외에도 낙조를 관찰하는 시점이 다분화 되어 있고, 360도 사방의 조망지점을 갖고 있는 여타의 낙조명소와 차별되는 독보적인 가치로 평가 할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당초(안)은 망주봉의 자연경관 일체성을 고려하여 도로를 경계로 망주봉 쪽의 일대 구역을 문화재지정구역으로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의견, 발굴조사결과보고서, 유물분포지도, 도시계획 상 용도구역, 주요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망주봉의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제2차 현지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화재지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지정구역 조정(안)

(당초) 지정구역 174,459m²(75필지)

(변경) 문화재지정구역 152,915m²(44필지), 문화재보호구역 19,845m²(27필지)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691m²(4필지)



○ 명승 지정 검토<조정안>의 문화재 지적구역 토지조사

- 문화재지정구역 : 152,915m²(44필지),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19,845m²(27필지)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구분
				지적면적	지정면적		
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임	115,934	115,934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2	임	1,785	1,785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4	임	1,488	1,488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5	임	496	496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1	전	331	331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2	전	172	172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3	전	1,494	1,494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4	전	764	764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5	전	1,266	1,266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8	전	493	493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9	전	575	575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	전	258	258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1	전	628	628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1	전	774	774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0	전	3,899	3,899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2	전	331	331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3	전	823	823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6	전	212	212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1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7	전	704	704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8	전	387	387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9	전	301	301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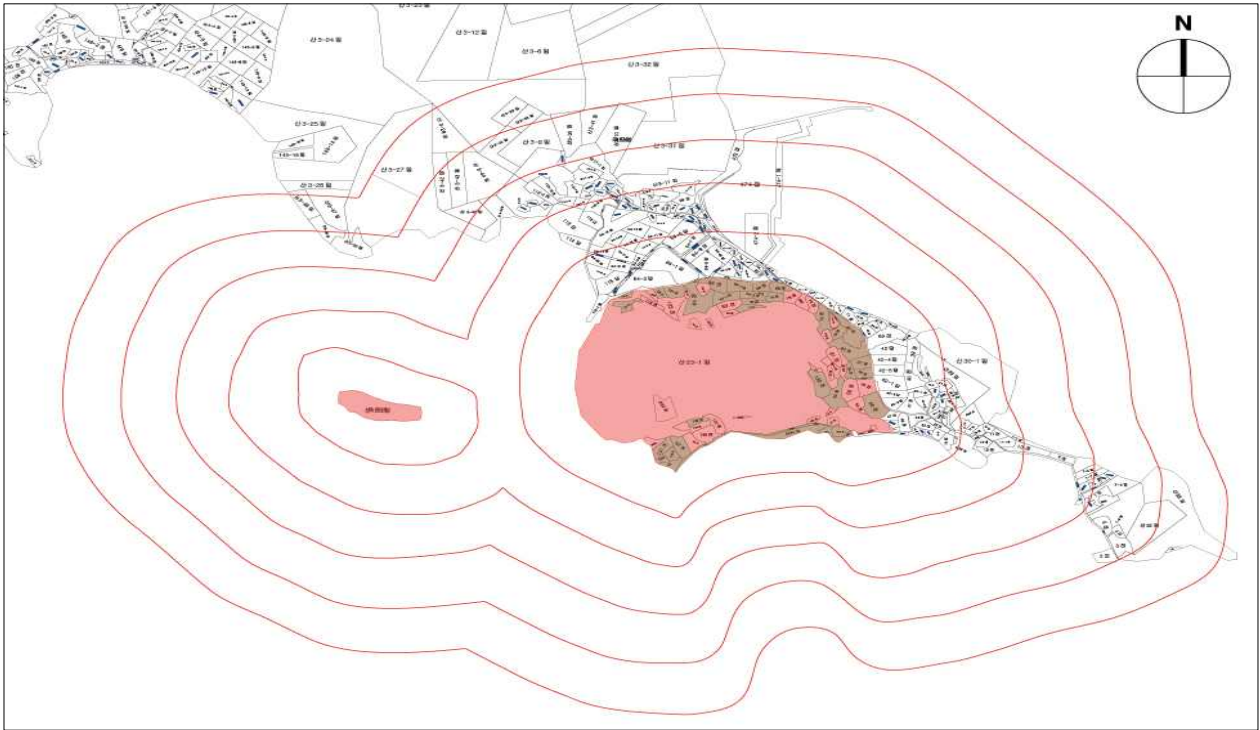
연 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구분
				지적면적	지정면적		
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3	전	1,425	1,425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4	전	390	390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5	전	152	152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7	전	185	185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8	전	1,488	1,488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9	대	255	255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0	전	486	486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2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1	전	106	106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2	전	830	830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3	전	436	436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	전	833	833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5	전	1,217	1,217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6	전	813	813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7	전	1,061	1,061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8	전	529	529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9	전	522	522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0	전	317	317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3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1	전	893	893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4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2	전	509	509	개인	문화재지정구역
4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2	도로	202	202	국(국토교통부)	문화재지정구역
4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3	도로	433	433	국(국토교통부)	문화재지정구역
4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0	도로	678	678	국(국토교통부)	문화재지정구역
4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5	임	6,040	6,040	산림청	문화재지정구역
	소계	44필지		152,915	152,915		
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	전	1,055	1,055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	전	1,779	1,77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	전	661	661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1	전	96	96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7	전	843	843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2	전	1,779	1,77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3	전	605	605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	전	1,500	1,500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1	전	239	23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	전	124	124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1	전	331	331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2	전	21	21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3	전	1,160	1,160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6	전	595	595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7	전	549	54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8	전	731	731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구분
				지적면적	지정면적		
1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9	전	569	56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	전	2,340	2,340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1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4	전	33	33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5	전	519	519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6	전	1,083	1,083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8	전	664	664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9	전	734	734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0	전	390	390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1	전	820	820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2	대	208	208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2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6	전	417	417	개인	문화재보호구역
	소계	27필지		19,845	19,845		문화재보호구역
	합계	71필지		172,760	172,760		

○ 검토 상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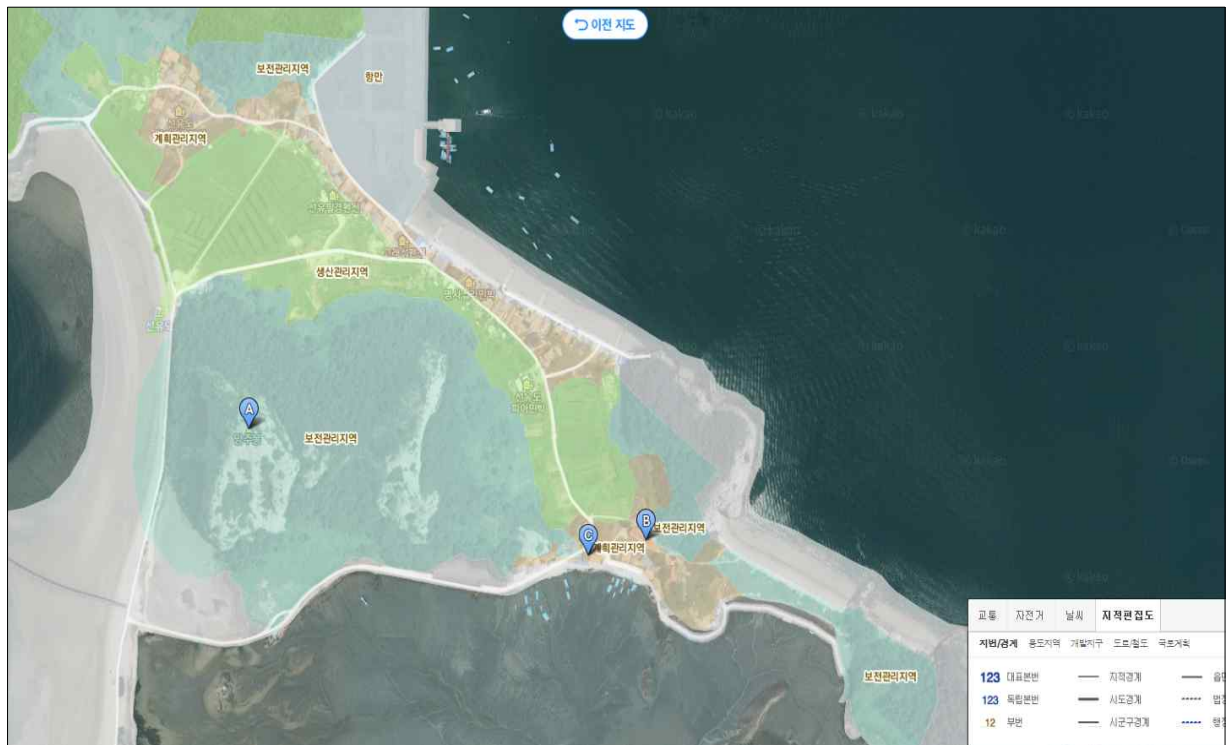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정구역 174,459m²(75필지) 당초(안)은 군산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 [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공유수면>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군산시 주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명승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2018.4.3. 선유3구 경로당) 및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된 반대의견 검토결과 명승 지정 반대의견은 생산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지로 파악되나 유적지 발굴조사결과 및 ‘매장문화재 유물분포지도’ 검토결과 문화재 유적지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0번지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8.5.11.) 시 명승지정예고 전 건축허가(제2014-건축과-신축허가-169)를 받아 3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고, 49번지(대), 49-1(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주민이 주거하고 있고, 유물분포지가 아니며, 철탑 주변 기존 건축물과 연속성을 이루고 있으나 망주봉을 바라보는 주요 조망지점(선유로리 481, 잡, 현재 주요 도로로 사용됨)에서 망주봉을 바라보았을 때 망주봉 자연경관의 일체성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구역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검토자료 1 : 명승지정반대의견 접수 현황



소유자 수 (명)	토 지 주 의 견			기타 (주소불명, 폐문부재)
	찬성	반 대		
		구 두	의 견 서	
133	79	21	20	13

○ 검토자료 2 :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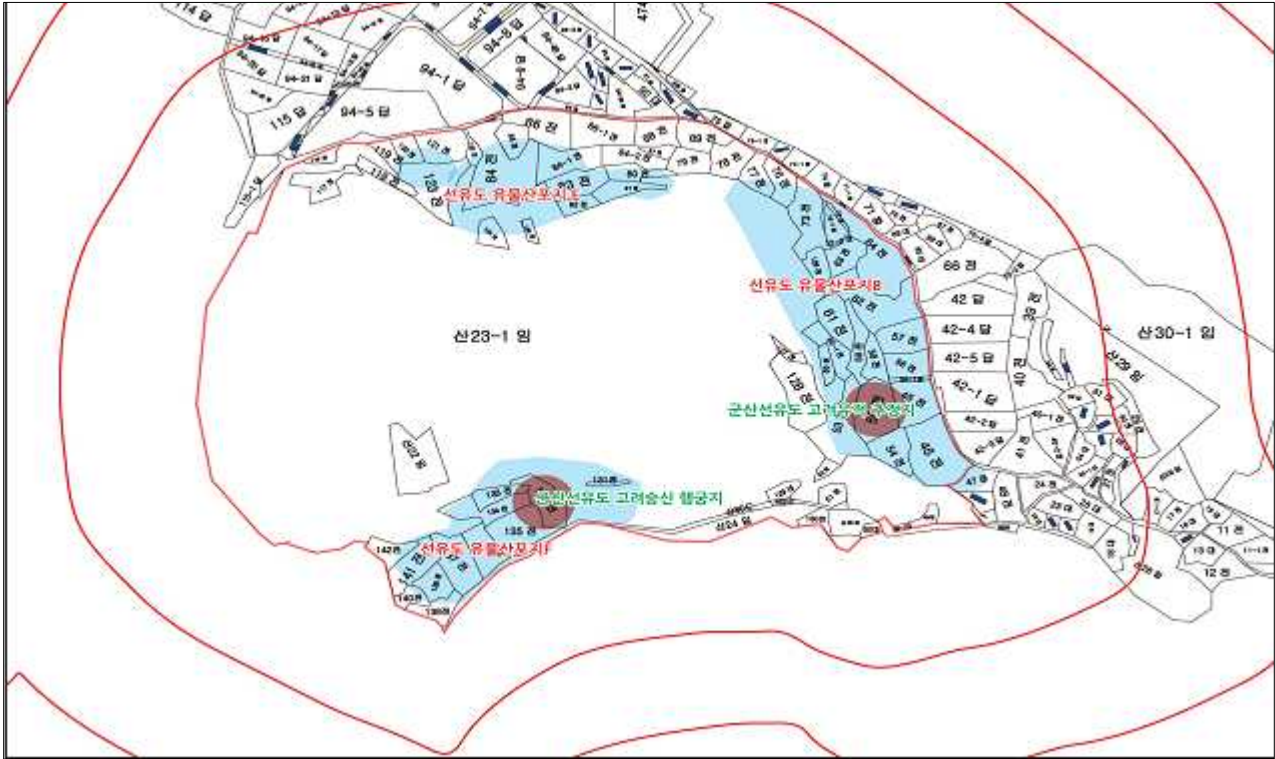


○ 검토자료 3 : 유적지발굴조사 및 문헌조사 현황

- <문헌조사 1>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 서공이 편찬한 「고려도경」에는 망주봉 남쪽 기슭은 ‘송산행궁’과 ‘군산정’터로, 동쪽은 ‘자복사’와 ‘객관’터로 추정됨
- <문헌조사 2> 2001년 발간된 「문화유적분포지도 -군산시-」에는 군산 선유도의 망주봉 주변으로 다수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1차_문화재지표조사> 2010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자체학술지표조사 결과 망주봉 주변의 유적에서 고려시대 기와편과 청자편 등이 출토되어 고려유적지로 확인됨
- <2차_문화재시굴조사> 군산 선유도 ‘고려 송산행궁지’ 및 ‘군산정’ 유적지 시굴조사(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 2013.12.9.~2012.12.31) 결과 고려시대 건물과 관련된 적심, 담장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청자양각도철문향로 편을 비롯한 상급 청자들이 출토됨[조사대상(5필지)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2번지, 133번지, 135번지, 136번지, 산23-1번지
- <3차_문화재시굴조사> 군산 선유도 ‘객관터’ 유적지 시굴조사(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 2015.12.8.~2015.12.31)결과 건물 적심, 석축시설, 석력 등 건물지의 흔적과 고려시대 도기편, 기와편, 청자편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건물지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됨[조사대상(1필지)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5번지



○ 검토자료 4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유물분포지도’ 현황



○ 검토자료 5 : 망주봉 주요 조망점(선유도리 481, 갑, 현재 주요 도로로 사용됨)에 바라본 자연경관



마. 전문가 조사의견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현지조사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검토의견 / 2018.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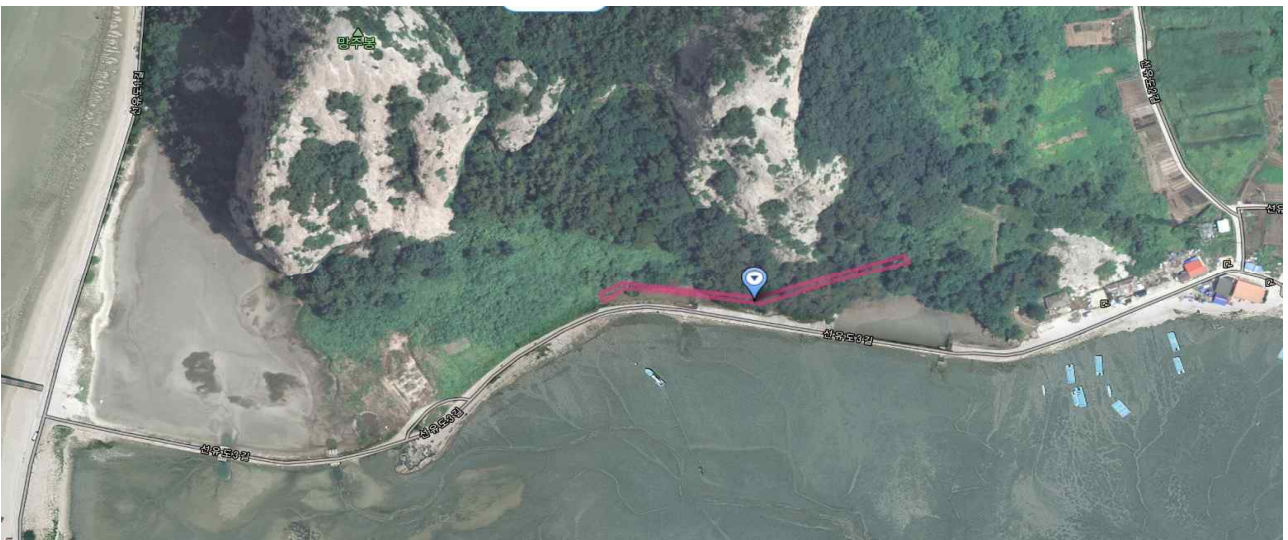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은 고군산군도 중 섬의 경치가 가장 아름다우며, 서해의 낙조기관(落潮奇觀)중 제 1경인 선유낙조를 바라 볼 수 있는 경관 집점이며, 송산행궁, 자복사, 객관 등의 터가 위치하는 등 자연 및 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구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대별되는 바, 전자의 경우 장소성 측면에서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후자의 경우 일체성 측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으로 선유도리 50번지(명승지정예고 전 건축허가를 받아 2018.5.11. 현지조사 시 3층 건물이 건축), 49-1번지, 49번지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역사경관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의 왜소화 방지 및 망주봉을 바라보는 주요 조망지점(선유도리 481잡, 주요도로)에서의 스카이라인 확보 측면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구역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검토의견 / 2018.5.11.)

- 선유도 망주봉은 화산작용에 의한 암석(유문암, 유문각력암)으로 이루어진 암봉(岩峯)으로서 해빈(선유도해수욕장)과 푸른 바다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매우 수려하고 특징적인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음.
- 한편 이 지역의 섬들은 모두 연륙교로 연결·개통되어(2017.12.28. 개통됨) 접근성이 수월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특히, 선유도 망주봉 주변)속히 명승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보존·관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의 지정구역 174,459㎡(75필지)를 문화재지정 구역 154,191㎡(45필지), 문화재보호구역 19,845㎡(27필지),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423㎡(3필지), 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망주봉 남쪽 현재의 도로 일부구간은 지반이 없는 매립지 위에 건설하여 지적도 상의 도로부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주요 조망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도로부지인 선유도리 462번지. 현재의 도로와 일치하지 않음.



<2018년 제1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1.)

- 망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여 서해의 낙조기관(落照奇觀)중 으뜸으로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이라는 장소성을 가지며, 시점장·대상장으로서의 명소성, 정체성 등을 확보하고 있음.
- 망주봉은 천연미적 특징이 두드러진 자연경관요소로서 시선과 동선 모두를 집중시키며, 특히 망주봉 자체로서 뛰어난 형태 및 경관미를 가지며, 주변의 활모양으로 굽은 선유도 해수욕장과 갯벌의 고즈넉한 해변풍경, 대장봉과 남악산 및 선유봉 등의 주변 지형과 조화되어 변화감·통일감을 주고 있음.
- 망주봉은 시각적 개방성이 우수하며, 바라보는 시점의 이격거리에 따라 색다른 경관 주대상이 되며, 특히 햇빛에 반사되는 암벽면이나 특이한 형태로 먼 바다에서도 찾아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지형적 특이성이 있음.

- 망주봉 정상에서의 낙조는 최대치의 개방감과 장엄의 경관이 극대화된 낙조 경관이라는 특징을 갖으며, 다수의 일몰 조망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지형적 요소로 부각되는 장면경관의 우수성과 더불어 선유낙조가 갖는 최대의 장점으로 평가됨.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은 고군산도의 최고의 조망지점으로, 경관구도의 탁월함 외에도 낙조를 관찰하는 시점이 다분화되어 있어, 한·두개의 조망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여타의 낙조명소와 차별화되는 명소성, 대표성을 가지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여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1.)**

- 선유팔경의 제1경인 ‘선유낙조’는 선유도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전체를 대표하고 선도하는 경관으로 각인되어 있으며, 망주봉은 선유낙조의 대표적 조망점이자 선유팔경을 중경 및 원경으로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조망점이자 역사·문화경관임.
- 망주봉은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경관 대상이자 선유팔경을 선도하는 파노라마틱한 낙조기관(落照奇觀)의 시점으로, ‘저명한 경관의 조망점’으로서의 탁월한 가치가 인정됨.
- 역사성이 비장(秘藏)된 망주봉 정상에서 조망되는 일몰시 경관 구도와 서해안의 여타 낙조명소와는 구분되는, 산과 바단 그리고 C자 커브를 보이는 자연성 높은 해안선은 절묘한 미적 조화를 보여줌.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1.11.)**

- 자연경관이 뛰어난 선유도의 망주봉 및 주변의 해안과 해넘이(선유낙조) 등 저명한 자연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조망점의 중심이 되고 있어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바. 명승지정 신청자료

I. 주요 지정 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류 : 명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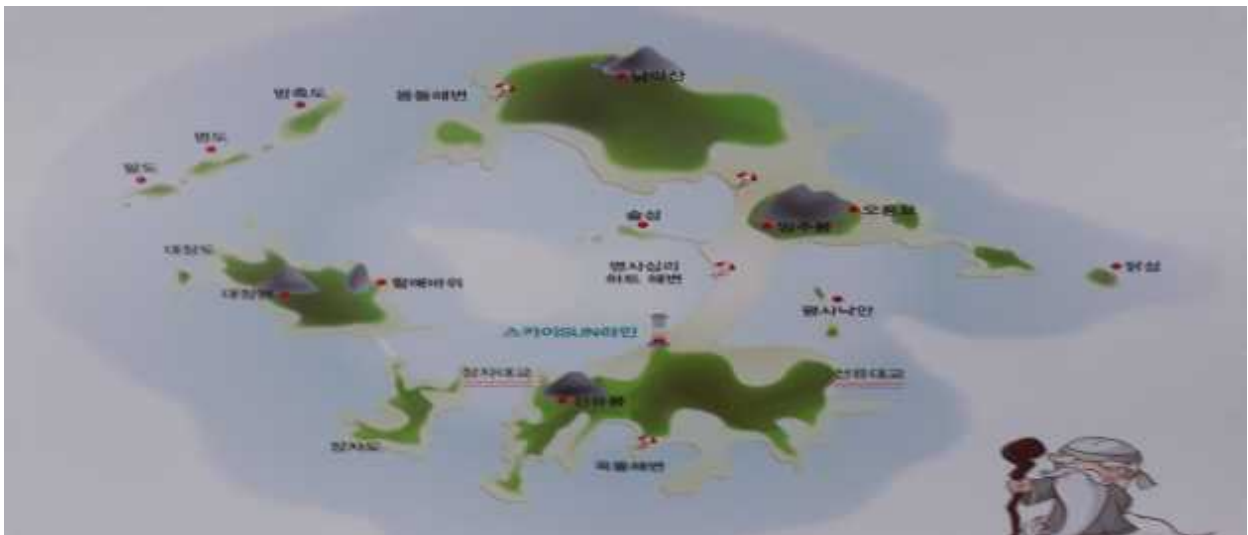
2. 문화재 명칭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한문: 群山 仙遊島 望主峰 一圓, 영문: MangJubong Peak and Surroundings in Seonyudo Island, Gunsan)

- 섬의 경치가 몹시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 하여 부르게 된 선유도 중 유배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렸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망주봉’ 과 그 앞에 있는 작은 ‘솔섬’만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문화재 지정 명칭 기준(‘지역+명칭’)에 따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입지 환경

- 선유도는 총 63개의 섬(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으로 구성된 고군산군도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군산에서 4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북섬과 남섬이 약 1.5km의 육계사주로 연결되어 있는 1개의 섬이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의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새만금해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 선유도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누어 지는데, 북섬에는 남악리 마을과 선유 3구(셋말) 마을이 있으며, 대봉(해발고도 150.0m)과 남악산(해발고도 152.6m), 망주봉(해발고도 104.5m)이 있다. 남섬에는 선유1구(통계)와 2구(통계) 마을이 있으며, 선유봉(해발고도 112.0m)이 있다.



< 선유도 지도 >

- 육계사주에는 해안 사구가 발달해 있고, 상부에는 모래 언덕인 사구가 형성되어 숲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쪽에는 간석지가 형성되었으며 서쪽 해안에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에 위치하는 송도 역시 육계사주로 연결된 육계도이며, 선유도의 북섬과 남섬 그리고 대장도에 의해서 만을 형성하고 있다.
- 선유도의 북쪽에 위치한 망주봉은 두 개의 암봉으로 백악기 말의 산성 화강암류에 해당되며 해발고도 104.5m이다. 망주봉 양쪽으로 남악산과 선유봉이 둘러싸고 있으며 전면으로 1.3km에 달하는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위치하여 이와 연결된 290m의

테크교량이 솔섬과 연결되어 있다.



< 망주봉과 솔섬 전경 >

2) 지형 및 지질 현황

- 선유도에는 백악기 유문암과 유문각력암이 나타나는데, 백악기 유문암의 경우는 유동구조 및 변형작용에 의해 형성된 킹크밴드와 층상구조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백악기 화산활동을 규명하고 고군산군도에서 일어난 화산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다.
- 유문각력암의 경우는 화산체 분출과 화도의 함몰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중첩 분출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쇄된 유문암의 기질을 채우고 있으며 다양한 분급을 보이는 역들이 기질 내에 분포하고 있다.
- 망주봉은 백악기 유문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도의 붕락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문암이 파쇄되어 기질과 각력 모두 유문암 기원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각력은 원마도가 높아 역암처럼 보이기도 하다.

3) 식물 현황

- 선유도가 소속된 고군산군도의 관속 식물은 92과 225속 300종 56변종 4품종의 총360분류군이 나타난다. 섬의 대부분은 곰솔이 한층 우세하며, 소나무도 일대에 출현한다. 주요 식물로는 갯그렁, 통보리사초, 갯쇠보리, 왕잔디, 갯방풍, 갯완두, 갯질경이, 갯개미취, 모새달, 나문재, 해당화, 청미래덩굴, 찔레꽃 등이 있다. 아울러 목본 식물로는 남방계 식물인 후박나무, 왕후박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송악 등이 있다. 또한 성황림 주변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동백나무, 꾸지뽕나무, 소태나무, 상산, 장구밥나무, 검노린재 등이 분포하고 있다
- 망주봉 일원 주요 식물상

- 목본식물 : 곰솔, 소나무, 노간주나무, 굴피나무, 사스레피나무, 자귀나무, 말오줌때나무, 장구밥나무, 예덕나무, 팽나무, 보리밥나무, 으름덩굴, 짚레, 굴참나무, 쥐똥나무, 산초나무, 소사나무, 싸리나무, 산벚나무, 졸참나무, 팔배나무, 진달래, 마삭줄 등
 - 초본식물 : 새, 개솔새, 억새, 그늘사초, 춘란, 맥문동 등
 - 지의류 : 바위솔 등
- 망주봉의 위치별 서식 식물의 생육 특성
- 하단부 : 서쪽 퇴적지에는 곰솔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 퇴적지에는 소나무, 굴피나무, 굴참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대경목이 산재하며 상층부를 형성하고, 사스레피나무(수고 1.2~3.0m), 말오줌때나무(수고 5~8m), 짚레가 중층과 하층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층에는 장구밥나무와 예덕나무가 분포한다.
 - 암벽 중간부 : 망주봉 중북부 남쪽 사면 ㅁ부에 넓은 퇴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 소나무와 노간주나무의 개체수가 많은 가장 큰 규모의 숲이 형성되어 있다. 소나무(수령 50~100년 추정), 노간주나무(수고 0.7~4m), 곰솔, 소사나무가 우점종으로서 여기저기에 퇴적토양층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산초나무, 산벚나무, 졸참나무, 쥐똥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사스레피나무, 굴피나무, 싸리나무, 진달래, 마삭줄 등이 아교목층과 관목층을 형성하고 있다. 초본은 새, 개솔새, 그늘사초 등이 생육한다.
 - 암벽 상부 : 곰솔과 노간주나무가 산재하고, 소사나무가 여기저기에 퇴적토양층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싸리나무도 산재한다. 정상부 퇴적토층에 곰솔 1그루(수고 4m, 가슴높이 직경 10cm, 망주봉 표지 부착)가 랜드마크처럼 생육하고 있으며, 하층에는 산벚나무, 진달래, 소사나무, 춘란, 새, 개솔새, 억새 등이 생육한다.
 - 상부 북사면 : 북사면 퇴적체에 팔배나무 소군락(수고 1~3m), 소사나무 소군락(수고 1.5~3m), 진달래 소군락, 마삭줄 소군락이 혼생하고 있다. 노간주나무, 싸리나무, 억새 등은 산재한다.

4) 지정예정구역 내 문화재 현황

○ 명승 지정예정구역 내 문화재 현황

순번	문화재명	지정번호	비고
1	오룡묘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23-1
2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


- 고려시대 1123년(인종 원년)에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공은 고려에 와서 한달 동안 머물면서 보고 듣고 한 사실들을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편찬하여 고려의 실정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서공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군산도(現 선유도)에서 군사들로 무장한 6척의 배를 보내 송나라 사신을 호위하게 하고, 섬에서는 1백 명의 군사들이 깃발을 들고 도열하고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군산도(現 선유도)에는 송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대규모 영접행사가 열렸던 곳으로, 현재 망주봉 동남쪽 기슭에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낸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위치해 있으며, 오룡묘 서쪽으로 객관으로 사용하던 송산행궁(崧山行宮)와 정자로 사용하던 군산정(群山亭), 동북쪽으로 불교 사찰인 자복사의 터(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가 남아 있다.



5) 경관 현황

- 선유도에는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선유8경이 있다. 문화재청(명승지원조사 보고서 전라북도편, 2001년)에 따르면 망주봉은 8경 중 6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명소이다.
- 그 중 망주봉에서 바라보는 선유낙조는 8경 중 제일 우수한 1경으로 손꼽힌다.

■ 군산 선유도 선유 8경

구 분		설 명	
망주봉	망주봉	망주봉은 옛날 이곳으로 억울하게 유배된 충신들이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렸다는 전설이 있으며, 망주폭포는 여름에 빗물이 흘러내리면 폭포를 이루었던 모습을 지칭한다.	

선유낙조	고군산열도의 중심지인 망주봉에서 바라본 일몰을 지칭한다.	
삼도귀범	선유도 망주봉 남쪽 바다에 떠 있는 세 개의 섬을 감돌아 귀항하는 범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세 개의 섬 (앞산섬, 주삼섬, 장구섬)	
평사낙안	선유도해수욕장 명사십리 모래톱을 내려다보면 기리기가 땅에 내려앉은 모습을 하고 있다.	
무산12봉	선유도를 중심으로 봉우리를 관조한 경관이다. 말도, 명도, 방축도, 횡경도 등 12개 봉우리가 마치 여러 무사들이 서 있는 것 같다	
명사십리	선유도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일컫는다. 근래에 알려진 해수욕장으로 물이 맑고 모래결이 좋으며 경사도 완만하다.	
장자도	장자도 앞의 칠산어장에 어찌나 많은 배가 몰려 고기잡이를 했던지 뱃불이 휘황 찬란해 붙여진 이름이다.	
신시도	신시도에는 해발 199m의 월영봉이 있어 또 하나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가을철에 신시도 앞바다를 지날 때면 월영봉의 단풍이 한국화의 병풍을 보는 듯하다.	

6) 경관 조망점 분석









○ 군산 선유도 낙조의 조망점 종합분석결과 4개소 중 조망점3(망주봉)이 우수함



[군산 선유도 조망점 종합분석 4개소 위치]

구분	조망점	조망각 가시각	조망유형	경관구도	대상장 특징
조망점1	선유도 해수욕장 솔 섬	양감	연속조망, 장(場)경관	수평적 요소 및 좌우 지형의 공간한정	○ 낙조지점은 남악산의 서쪽 능선 너머 원경에 나타나는 말도, 명도, 방축도 위로 조사됨 ○ 근경의 솔섬과 데크교량이 시각적 유도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배후에 위 치한 섬의 실루엣과 어울려 아름다운 낙조경관이 창출됨
		220°≥			
조망점2	선유도 해수욕장 야외공연장 부근	양감	연속조망, 장(場)경관	수평적 요소 및 좌우 지형의 공간한정	○ 낙조지점은 대장도 곁의 가마우지섬 부근임. 백사장을 따라 시점을 옮겨가 면 낙조지점도 달라짐
		240°≥			
조망점3	망주봉 정상 (104m)	부감	지점조망	360°파노라믹 전경관	○ 낙조지점은 전면의 대장봉 및 남악산 끝단 사이의 해수면임 ○ 사방이 트인 도서, 해안경관을 볼 수 있고, 수목, 지형 등 조망을 방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으며, 아찔한 절벽 위 로 자연의 신비감을 만끽할 수 있는 비경이 연출됨
		360°			
조망점4	선유봉 정상 (112m)	부감	지점조망	중첩형	○ 낙조지점은 관리도 능선부로서, 해상 에 떨어지는 일몰은 봄, 여름 일부 시기로 한정됨 ○ 북쪽 시야가 시원하게 열려있는데, 망주 봉과 남악산의 형태가 아름답게 조망 되며 서해 방향의 경관 역시 일품임
		160°≥			

■ 조망점3: 망주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

대상장(낙조 가시권)	가시범위
	
	
	
	

■ 조망점3: 망주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조



4. 연혁·유래 및 특징
- 1) 역사 및 문화적 가치

- 13세기에 들어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군산도는 피난민의 집결지와 대몽 항쟁 세력의 근거지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0년(원종 11년) 삼별초는 난을 일으켰고, 6월 3일에 천여척의 배를 동하여 강화도 구포를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했다. 최종 목적지 진도에 도착한 것은 강화도를 떠난지 70여일 만인 8월 19일이였다. 강화에서 진도까지 항해하는데 70여일이라는 긴 시일이 소요된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항해하는 길목에 군산도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삼별초가 군산도에 정박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오늘날까지 군산도에 왕릉이 있었다는 기록이 다수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경현조에는 섬 안에는 큰 무덤이 있는데 마치 군왕의 능과 같다. 근세에 이웃 고을 수령이 그 무덤을 파헤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많이 얻었는데,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자 도망갔다”고 하였다. 또 『동여비고』에서도 군산도 안에 큰 무덤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왕릉이라고 쓰여 있다. 이 왕릉은 삼별초군에 가담한 왕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크다. 금제, 은제 그릇을 부장한다는 것은 왕족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이다.
- 고려시대 14세기 군산도는 왜구의 극심한 침략에 시달리게 된다. 1323년(충숙왕 10년) 6월 왜구는 군산도에 침입하여 개경으로 가는 조운선을 습격하여 조세미를 약탈해갔으며, 진포대첩 때에는 왜구가 진포에 들어올 때 그 길목에 있던 군산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고려 전기의 수군 시설과 군산정, 오룡묘, 자복사, 승산행궁 등 뿐 만 아니라 민가들도 모두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선시대 정유년(1597년) 9월 21일자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고군산도에 도착하였다”에서 ‘고군산도’의 명칭이 최초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시대 1624년(인조 2년)에 군산도에 별장(別將)을 파견하고, 진(鎭)의 이름을 기존 진포에 설치된 군산진과 구별하고자 ‘고군산진’이라고 칭하고 해방(海方)을 전담하게 하였다. 1864년에 만들어진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와 1896년에 만들어진 『호남 진지(湖南鎭誌)』의 「고군산진 지여사례병록성책(古群山鎭誌與事例并錄成冊)」에서는 군산도의 폐진(廢鎭)과 복설(復設)을 “본래 군산도진은 해랑적(海狼賊)[왜구]들의 침략을 받아 옥구현 북쪽 진포의 해변[지금의 군산진]으로 옮겨갔는데, 인조 2년에 옛 진에 별장(別將)을 두어 고군산이라 칭하였다.”, “옛날 진터가 망주봉의 뒤에 있는데, 해랑적들에 의해 폐진(廢鎭)되었다. 천계(天啓) 갑자(甲子)[1624년(인조 2년)]에 복설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자료를 통해

군산도의 폐진은 고려 말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 지명 ‘고군산군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지방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명을 개칭 할 때 각 도서마다 섬 이름을 관에 제출하도록 한데서 비롯된다. 당시 신시도의 경우 고군산 일대에서 가장 험하고 수림이 울창한 신시산(薪侍山)의 산명을 따서 신시도로 이름을 제출하였으나 신시도로 잘못 기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무녀도, 선유도, 방축도 등도 이때 명명되었으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 조선시대 후기 1746년(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고군산진에 전선(戰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배치되었다. 그런데 1808년(순조 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고군산진에 전선(戰船) 6척, 병선(兵船) 6척, 방선(防船) 2척, 사후선(伺候船) 10척이 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전라우수영이 전선을 2척 보유하는데 반해 고군산은 전선이 6척으로서, 우수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전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고군산진은 이때 조선 전 수군 진영을 통틀어 최대의 군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19세기 초중엽에 고군산진에는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였다.
- 『고려사』, 『조선 왕조 실록』에도 군산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주로 왜구의 침략, 전라우영(水營)의 운영 문제가 거론되었고, 『조선 왕조 실록』을 포함하여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을 통해 군산도가 조선 후기 주요 유배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 상기 고문헌의 자료에 따르면 선유도는 고려시대에는 여·송 무역로의 기항지 역할을 하였고, 진포 해전에서 왜구에게 승리한 최무선의 기지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군절제사가 통제하는 수군의 본부로서 기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선유도 일대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후 전열을 재정비한 함선을 정박기지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 역사 및 경관적 가치

- 『호남진지(湖南鎭誌)』 2권 「古群山鎭誌與事例并錄成冊·名山조」에 망주봉의 8경에 대한 ‘무산십이봉’, ‘망주봉’, ‘선유봉’, ‘오룡묘’, ‘삼도’의 경관적 가치에 명시되어 있다.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 가로로 서해를 막고 아울러 바깥으로 해문(海門)이 있다. 만력 연간 경신년에 지방관이 고을이 쇠락하여 규모를 갖추지 못하자 전주부로 이속시켰는데 이때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열두 봉우리가 아롱지며 빛난다(十二峯斑斑)”고 실려 있다. 지

난날 참의(參議) 조각(趙恪)이 이것으로 산을 이름 지어 증거로 삼고 상소를 올려 다시 영장(營將)을 설치해달라고 청했을 뿐이다.

망주봉(望主峯): 진안과 마주한다. 북쪽으로 거리가 2리 정도인데 쌍암(雙巖)이 우뚝 솟아 사면이 깎아지른 듯하다. 괴연(魁然)하여 마치 대의를 끼고 굽히지 않는 것 같으니 참으로 이 지방의 장관이다. 매달린 절벽과 외로운 구름이 정정(亭亭)하여 세한(歲寒)의 모습이 있다. 이르는 곳마다 대사(臺榭)가 여럿 있어 화축(華祝)에 이바지하는 모습이다. 봉우리 북쪽에 돌우물이 있는데 이름이 용정(龍井)이다. 봉우리 남쪽 유배객 교리(校理) 이정명(李徵明)이 아들 덕수(德壽)와 아우 징하(徵夏)의 이름을 돌에 새겼다.

선유봉(仙遊峯): 진 서쪽 4리 정도에 있다. 푸른 바위가 우뚝 솟아 모양이 연꽃이 높다랗게 핀 것 같고, 면면한 암석이 마치 신선이 나란히 앉은 모양 같아 그리하여 이름 지은 것이다. 남쪽 산기슭 아래 혈암(穴巖: 굴바위)은 가로로 구멍이 뚫렸는데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가 된다. 작은 배가 들어갈 수 있어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이따금 악기를 가지고 와서 노니니 소리가 울려 마치 신선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오룡묘(五龍廟): 망주봉의 왼쪽에 있다. 예로부터 영험함이 가장 잘 드러나 남북을 왕래하는 배가 기도하면 영험함이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옛날에 어떤 기와가 얽힌 큰 집이 있었는데 바람을 가로막아 오래도록 멈추어 가려해도 갈 수 없었다. 이에 채색된 기와 30개를 모에 들여 소원을 빈 뒤에야 순풍을 받고 순조롭게 지나갔다. 이때 들인 청기와의 여전히 대들보 위에 남아 있다. (이상 명산조)

삼도(三島): 남쪽 해문(海門)의 오른쪽에 있는데 하나의 구역을 이룬다. 정좌하고 깊이 가로막혀 마치 신선의 별장에 있는 듯하다. 옛 시에 “육오의 죽은 뼈엔 이미 서리가 내렸으니, 삼산은 흘러가서 어디에 있는고.[六鰲骨已霜 三山流安在(李白의 시 「登高邱而望遠海」)]”가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하략)

- 이견창(1852 ~ 1898), 『명미당집(明美堂集)』 권6, 「벽성기행(碧城紀行)」, <검소루(劍嘯樓)> : 절제사가 오지 않는 누각의 화려함과 쓸쓸함, 고군산의 절경과 적막함 등 표현함

劍嘯樓 舊節制使官衙 검소루(구 절제사 관아)

十二聯峯蔽北望 열두 개의 잇따른 봉우리가 북쪽을 가로막아서
登高聊復趁新涼 높은 곳에 올라가니 잠시 마음이 새롭고 시원하구나.
天連蜃閣雲多態 하늘은 신기루와 이어지고 구름은 다양한 모습이며
地近龍祠雨有香 땅은 용신 사당과 가깝고 비는 향기롭다.
制使不來樓寂寂 절제사가 오지 않으니 누각은 적적한데
流人相顧海茫茫 유배 온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니 바다는 망망하다.
隨身短劍彈何用 몸에 지닌 세총통의 탄알을 무엇에 쓰겠는가
萬里西風一嘯長 만 리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길게 한번 운다.

危樓極目旅魂驚 위태로운 누각의 용머리 끝이 나그네의 녀을 놓게 하고
 獵獵西風秋已生 불어오는 서풍에 가을이 이미 오네.
 天際雲從何郡起 하늘 끝의 구름은 어느 고을에서 일어났는가
 樹頭蟬是故鄉聲 나무 꼭대기의 매미소리가 바로 고향의 소리네.
 瘴深薏苡應無力 더위가 깊어지니 울무와 질경이는 기운이 없고
 坐久桃榔尙有情 오래 앉아있는 광랑나무가 오히려 정이 가는구나.
 記取清閑堂外樹 청한당의 바깥에 있는 나무를 기록하려 하는데
 紅霞初暎夕陽明 붉은 노을이 지면서 석양이 밝게 비추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저명한 경관(낙조)의 전망지점

-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선유도의 망주봉은 최고의 조망점이자 경관대상
- 고서화 고문헌을 통해 입증된 역사문화경관 자원임.
- 망주봉은 백악기 유문각력암 등 지형 지질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은 대상임.

6. **** 문화재위원회(제3분과위원회) 검토의견, 2018.1.2) : 가결

- 국가지정문화재재(명승) 명칭 변경(당초 : 군산 선유도 → 군산 선유도 망주봉 낙조)

7. <***>의 명승 지정신청 당초(안) 토지조서 : 174,459㎡ (75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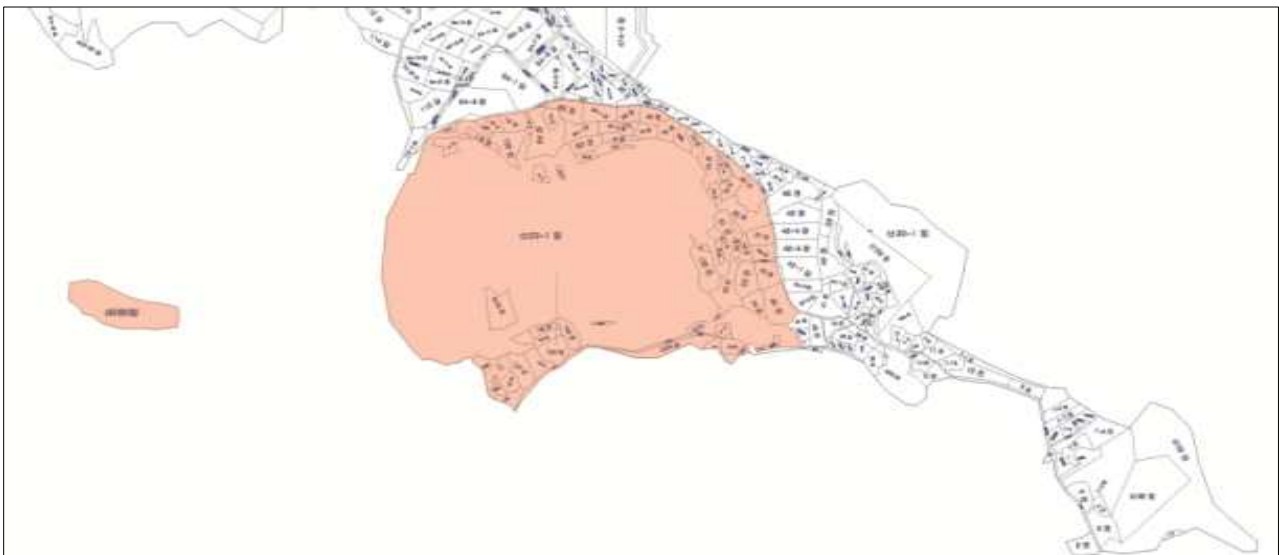
- 보호물 및 보호구역 : 해당 없음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임	115,934	115,934	개인
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2	임	1,785	1,785	개인
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4	임	1,488	1,488	개인
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5	임	496	496	개인
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	전	1,055	1,055	개인
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	전	1,779	1,779	개인
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9-1	대	66	66	개인
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9	대	212	212	개인
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0	대	145	145	개인
1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1	전	331	331	개인
1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2	전	172	172	개인
1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3	전	1,494	1,494	개인
1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4	전	764	764	개인
1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5	전	1,266	1,266	개인
1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	전	661	661	개인
1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6-1	전	96	96	개인
1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7	전	843	843	개인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1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8	전	493	493	개인
1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59	전	575	575	개인
2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	전	258	258	개인
2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0-1	전	628	628	개인
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1	전	774	774	개인
2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2	전	1,779	1,779	개인
2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3	전	605	605	개인
2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	전	1,500	1,500	개인
2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64-1	전	239	239	개인
2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	전	124	124	개인
2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1	전	331	331	개인
2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2-2	전	21	21	개인
3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3	전	1,160	1,160	개인
3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6	전	595	595	개인
3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7	전	549	549	개인
3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8	전	731	731	개인
3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9	전	569	569	개인
3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0	전	3,899	3,899	개인
3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2	전	331	331	개인
3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3	전	823	823	개인
3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	전	2,340	2,340	개인
3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4	전	33	33	개인
4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5	전	519	519	개인
4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6	전	1,083	1,083	개인
4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8	전	664	664	개인
4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9	전	734	734	개인
4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6	전	212	212	개인
4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7	전	704	704	개인
4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8	전	387	387	개인
4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9	전	301	301	개인
4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0	전	390	390	개인
4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1	전	820	820	개인
5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2	대	208	208	개인
5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3	전	1,425	1,425	개인
5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4	전	390	390	개인
5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5	전	152	152	개인
5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6	전	417	417	개인
5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7	전	185	185	개인
5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8	전	1,488	1,488	개인
5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29	대	255	255	개인
5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0	전	486	486	개인
5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1	전	106	106	개인
6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2	전	830	830	개인
6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3	전	436	436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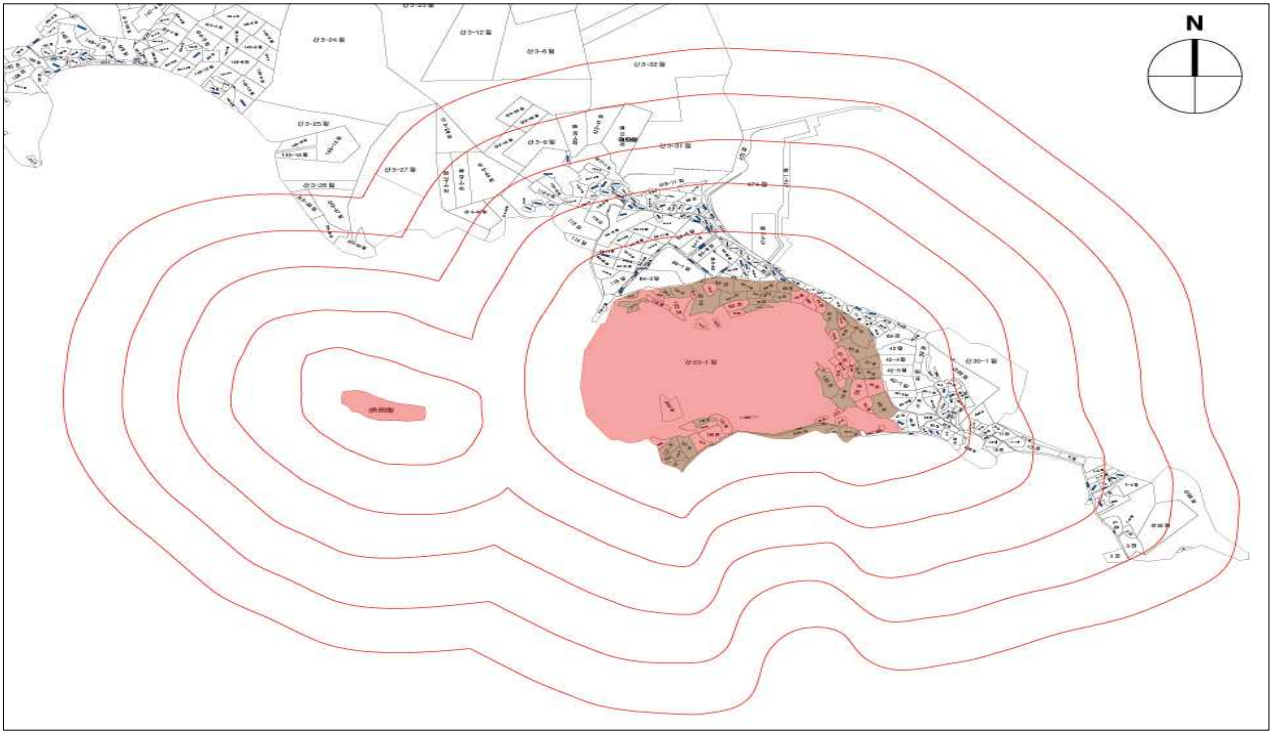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6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4	전	833	833	개인
6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5	전	1,217	1,217	개인
6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6	전	813	813	개인
6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7	전	1,061	1,061	개인
66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8	전	529	529	개인
6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39	전	522	522	개인
68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0	전	317	317	개인
69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1	전	893	893	개인
70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42	전	509	509	개인
71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2	도	202	202	국(국토교통부)
7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63	도	433	433	국(국토교통부)
73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0	도	1,686	1,686	국(국토교통부)
7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59	도	5,035	268	국(국토교통부)
75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5	임	6,040	6,040	산림청
	합계	75필지		179,226	174,459	

○ <***>의 명승 지정 신청 당초(안) 지적도 : 174,459m²(75필지)



사. <***>의 주민설명회 후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요청(2018.4.12.)

변경 내역			제외내역
구분	당초	변경	
면적(m ²)	174,459m ²	141,545m ²	반대의견 : 30,325m ² / 도로 : 2,589m ²
필지	75필지	36필지	반대의견 : 35필지/ 도로 : 4필지
소유자수(명)	133명	65명	



아. 주민반대의견서

수신 :

참조 :

제목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에 따른 찬/반 의견 회신

발신 :

1.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관심과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에 따른, 관 옥도면 선유도리 소재 토지 소유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 드립니다.

*** 아 래 ***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지 번 : 전북 군산시 옥도면

5. 연 락 처 :

6. 의 견 : 반 대

7. 사 유 :

1) 관 소유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 신청 및 건축 허가 완료.

① 허가번호 :

② 주용도 :

2) '17년 12월 末 선유도 다리 개통에 따른 건축물 신축 공사 착공.

① 착공일 :

② 축방(경계벽) 완료, 급수공사 신청 완료, 전기 시설 공사 신청 완료 등.

3) 선유도 다리 개통 전 건축물 신축시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다리 개통 일정('17년 12월 27일 개통)에 맞춰 건축 공사 진행 중('16년 1월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 신청 완료 및 용년 3월 착공계 제출 완료)

4) 정부/해당 기관의 명승 지정시 토지 및 건축물 수용이 예상되는바 상기의 사유로 기 진행되고 있는 토지내 건축물 공사 관계로 명승 지정에 반대 합니다.

5) 추가로, 명승 지정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수용 대상 제외를 요청 합니다.

제 출 일 : 2018년 3월 5일

제 출 자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 문화재(명승)지정 예고

- 소유자 : [redacted]
- 연락처 : [redacted]
- 소유지 : [redacted]

[의 견]

-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은 문화재 지정에 앞서 대안부터 제시하라.
- 문화재청장은 전북도민이 만족하고 이해관계인이 동의할 때 까지, 문화재 지정을 전면 중단하라.
- 요식행위의 결여로 법적 대응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10년 이상)에 이어, 문화재 지정 예고는 토지주들 2번 죽이는 것도 모자라, 부관참시 하는 꼴이 됩니다.
- 30여년의 투쟁? 끝에, 이제 열리게 되는 새만금시대와 서해안 해양국제 관광 시대를 맞아, 소위 죽 썩서 깨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고, 먹고, 즐기고, 잠자는 체류형 선유도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선유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고군산군도 연결국도 개통으로 내부개발에 박차, 밀려오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야 할 이때, 5만평이 넘는 땅을, 대토없이 토지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엔 토지주들은 물론, 전도민이 아연 실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군산시장과 전북도지사는 시급히 대안을 찾으십시오.
문화재도 보호하고, 토지주들도 마음을 열게하는 방법, 내부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 알토란 같은 토지값을, 감정평가 보상만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From:

To: 4543269

02/03/2018 09:59

#242 P.002/002

- 이해관계인과의 대화나 정보교환,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열린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새만금시대가 꽃 피고**, 선유도가 세계 해양관광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망주봉 아래 몇 평의 땅을 소유했던 금지가, 세계인의 마음을 치료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있는 시도를 기대해 봅니다.

2018. 3. 2.

재산 상속은 상속용 임의
또는 지정문화재(법등) 지정 예외 의견서.

성명:

소재지: 경상시 무로면 신유동리

의견: * 장기간 소유로 개인 사유권 보장 포함

* 지정시 개인 재산의 손실 고려

* 어떠한 보상금이 추진시 소유주 등의
반향이 예상되고 기호권의 침입권
침해 있음.

* 위와 같이 사유권 지정 하지 않기를
의견으로 제시함.

2018 . 3 . 5

성명: ;

주소: ;

2018.03.12 14:29
2018.03.12 18:00

탄원서

수신: _____

참조: _____

탄원인: _____

제목: 군산 선유도 양주봉 일원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지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발령

1. 군산시장님과 문화예술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문화 예술과에서 발송하신 "군산 선유도 양주봉 일원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지정예고 알림"에 대한 _____ 외 3인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3. 반대이유
 - 가. 문화재 보존 검토대상지역이 고려행궁 반경 500m나 된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 나. 2015년~2016년에 오룡묘 근처 자목사터 발굴현장을 본연도 목격할만 있는바 그 당시 출토된 유물의 내용을 본인이 상세하게는 모르나 출토유물의 양이나 길에 비해 문화재 보존검토 대상지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 다. 본인은 선유도 2구에 있었던 고군산 수군진터(선유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터)를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을 추진할 것을 권의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와 현존하는 수많은 절제사 기념비를 잘 보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 선유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현재 매립된 지역으로 이전건설하면 될 것입니다.
 - 라. 고려 행궁터 복원으로 추진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는 않지만 그 대상지역을 **폭도하게 넓은 지역으로 설정하여 수 많은 사람(_____ 외 132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맺는말.

본인과 본인의 가족(_____)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선유도리 _____ 양주봉일원 국가지정 문화재 지역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에 단원서를 제출하오니 신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02일

탄원인: _____

비

중

문

나

의견서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 지정 문화제(명성) 지정 예고건 -

성명 : 김민우

연락처 : 010-9701-0500, 010-9704-2401

날짜 : 2018. 02 /27

내용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11-1 주소지 문화제 지정 건에 관해 반대 의견을 보냅니다.

차 후 펜션을 건립하여 생계 유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문화제 지정 건으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번 지정 예고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소유주 김민우

의 견 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망주봉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정 관련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아 래-----

토지소재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00번지

의 견 :

본인은 본토지의 합병전 지번인 4, 5, 6, 7, 8, 9번지상에 2년 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인근토지를 추가 구입하여 합병후 건축할려고 했는데 최근 망주봉 일원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되어 건축하는데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여 본인은 문화재 지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8년 3월 2일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군산시 귀중

발신 : 한국자원재활용협회중앙회

수신 : 주식회사 동화에너지 동화제철

제목 : 주식 선취권 양도권 일원 추가자정동화제 (명승) 자정 예외에 대한
도A주 의견

1. 본인은 주식A 주도면 소위주입니다.
2. 본회생산을 영위하고자 부담한 이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외로 도A를 구입하였습니다.
3. 본회 도A를 외사대로 권리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었다면
A주자선권 권리가 사유됩니다.
4. 이에 본인의 도A는 추가자정동화제 (명승) 자정 예외에
동의할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내용증명 1.

수신인 1 : 대한민국 대통령 : _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수신인 2 : 전라북도지사 : _ _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수신인 3 : 군산시장 : _ _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수신인 4 : 문화예술과장 : _ _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수신인 5 : 문화재계장 : _ _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수신인 6 : 주무관 : _ _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제목 : 지정문화재 지정 반대(관보 공고 제 19189호)

1. 주무관 _ _ _ 라 문화재보니 명승은 아름다운 곳이어서 지정한다는데, 고군산군도에 더 가치있고 아름다운지역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만 지정되는가?
2. 왜 전라에 명승으로 지정하지않은 것인가? 과거엔 아름답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가 국도개통이후 상황이 바뀐것인가?
3. 국도개봉이전에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을 때 토지매입을 서두르지않은 것은 국고를 낭비하기 위함인가?
4.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은것인가?
5. 군산시가 구역내의 토지구획과는 상의하지않고 명승지정예고를 하는 것이나, 군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제안을 본인들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나,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것은 본인들의 자의인가 제3자의 지령에 의한것인가? 현정부가 개혁적이고 중도 좌파적성향을 갖고 자유보다는 민주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옳리었지만, 이런 명승지정처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과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 군산시는 도재사의 지시나, 아니면 현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기바란다.
6. 본 내용증명과 당신들의 답변서는 도착즉시 청와대로 보내 현정부의 정책 성을 물을 계획이니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람. 이상 끝.

2018년 2월 22일

이 무관번호 2018-02-22
제 356912006406호의 외화수
내무부무관들의 발송일자를 증명함
전주우정국장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예고에 대한 의견
수신 : 군산시장
경유 : 문화예술과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는 해수욕장 등 섬 자체가 관광자원이므로 망주봉 일원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이 선유도지역 발전에 의미가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임야로 되어있는 망주봉 정상 일원 임야의 문화재(명승) 지정에 대하여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주변 저지대 전은 명승과 무관한 밭으로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선유도 일원 현향을 감안할 때 제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 소로에 인접한 본인 소유의 신..... 인접하여 공공건축물(화장실), 주택 등이 있는 밭으로 주택신축 예정이며, 문화재(명승)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므로 불가피할 경우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안 되도록 구역지정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전반적으로 구역지정에 반대합니다.

2018년 3월 5일

성 명 :
토지소재지 : 군산시 옥도면
주 소 :
전 화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원뿔 국가 지정 문
화재(명승)지정 예정 관련 의견

성명 :

연락처 :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의 견 : 문화재 지정을 적극 반대함이다.
주위 환경이 좋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
이 누리하고자 하는 기본생활 권리
마저 제약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함이다.

2018. 3. 9

.....

발신: *

수신: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장

참조: 군산시 문화 예술과장

제목: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제안 의견의견.

上記(상기) 내용과 관련사항입니다.

본인은 * 망주봉주변 토지소유자입니다.

본인 토지소유자가 육지와 거리상 떨어진 고군산군도에 위치해있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왔는데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계자노력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도로개설 인육교 공사준공으로, 2018년부터 交通(교통) 출입이 원활해 무너, 선유도 접근이 쉽고 이용해 전북도와 시, 관계자들의 많은노력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였는데 기쁨과 기대도 잠시 뜻밖에 찾아온 안동의 면지 내용은 불정격 通知(통지)로 靑山市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계획이니 '憲見' 제시하라는 것이다.

각자 편사람 편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希望과 期待(기대)를 가졌고 落鳥(낙도)인 仙遊島(선유도) 인육교 희망의 다리가 連結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靑山市'는 '망주봉일대'를 「문화재 지정」 計劃(계획)이라니, 이곳의 토지소유자 個人들은 國家機關인 靑山市에 양보하고 나가라는 유도성 계획방향에 전혀 동의못하며, 뼈아듯 強한 組織(조직) 힘으로 밀어붙이식 된다면 個人(개인)은 이런 國家(국가)를 어떻게 믿고 받붙이고 산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충분한 개인에게 만족할만한 後屬代案 提示(제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대로는 '절대 同意(동의) 할수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國家(국가)의 거대한 强者(강자)힘으로 官(관)의 이익쪽만 쫓아 個人들의 권리는 무시된채 小敗弱者에 犧牲(희생)으로, 官(관)이 소수자의 약자에게 행하는 橫暴(적폐)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간악에 周邊을 地方共益 觀光 特性을 살려서 그 일대 全體 土地(토지)를 共同(공동)開發한다면 既存 所有者土地 近接位置에 「*源紙支給 方式」 開發로 靑山市와 내용에따라 相談檢討 할수있음을 알려드리고,

「收容」은 絶代(절대)不可(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인한 土地件으로 다른상처와 아픔이없도록 협조부탁드리며, 土地가 保存維持 되도록 官(관)의 협조바랍니다..



수신 : 군산시
참조 :)
발신 :)

군산 선유도 망주봉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에 대한

의견서

그동안 저는 선유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알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옹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지정에 전체에 대해 복원이 아니라 원래 문화재 자리는 복원하더라도 저의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들은 전체 지정하는 의견보다 본래 토지만 지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청도 군산대학교 박물관 담당교수도 방문하여 사정을 해봤지만 군산시로 이관 되었으니 군산시하고 협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시간만 허비하면서 저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은 군산시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참기 힘든 실정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나, 이 계획도 실거래가 책정이 힘들 것이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망주봉 일원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선유도는 천혜의 관광지로 어느 정도의 개발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질 좋은 숙박시설과 레저 공간 등을 통해 주민소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난 결과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현재 상황을 특히 이해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문화재 지정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된 양주봉 분 토지만 지정하시고 저의 토지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허가통 년 이후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될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 02. 28

—)

군산시 귀하

수신 : _ _ _ 군산시청
참조 : : 문화예술과장
발신 : (선유도리)

군산 선유도 망주봉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에 대한

의견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_ _ _ 시장님과 _ _ _ 문화예술과장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번 망주봉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합니다. 그동안 저는 선유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과 마을이 모두 지쳐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지정에 전체에 대해 복원이 아니라 원래 문화재 자리는 복원하더라도 저의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들은 전체 지정하는 의견보다 본래 토지만 지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청도 군산대학교 박물관 담당교수도 방문하여 사정을 해줬지만 군산시로 이관 되었으니 군산시하고 협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시간만 허비하면서 저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은 군산시의 막상행정에 분노를 참기 힘든 실정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나, 이 계획도 실거래가 책정이 힘들 것이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망주봉 일원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선유도는 천혜의 관광지로 어느 정도의 개발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질 좋은 숙박시설과 레저 공간 등을 통해 주민소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난 결과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현재 상황을 특히 이해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문화재 지정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된 양주봉 본 토지만 지정하시고 저의 토지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허가를 낸 이후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될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토지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 일부지정만으로도 문화재는 충분하다.
나머지 토지는 개발을 허가하라.
3. 하루빨리 지정을 철회하고 선유도를 개발하라.
4. 토지보상을 현재 싯거래가로 하고 그동안 피해를 보상하라.
5. 먼저 개발허가 후 보상에 임하라.

2018. 02. 13

1

군산시 귀하

자. 군산시의 주민설명회(2018.4.3.선유3구 경로당) 참석 서명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연번	이름	주소	서명
1	김		김
2	김		김
3	김		김
4	김		김
5	김		김
6	김		김
7	김		김
8	김		김
9	김		김
10	김		김
11	김		김
12	김		김
13	김		김
14	김		김
15	김		김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연번	이름	주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4명, 조건부가결 6명

2.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전통수상체험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전통수상체험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전통수상체험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016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6.11.11.) 결과
 -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신청인: *****) : 불허
 - 부결사유 :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쇠소깍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 및 수면 위에 신청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쇠소깍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수상자전거 여가 활동은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과 어울리지 않음
 -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수상레저시설 설치 운영’(신청인: ***) : 불허
 - 부결사유 :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쇠소깍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 및 수면 위에 신청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쇠소깍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카약 여가 활동은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과 어울리지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등
 - 지정일 : 2011.6.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전통수상체험사업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1459(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89(천)
 - 사업면적 : 4,665㎡(수상체험장 4,600㎡, 계류장 65㎡)
 - 사업내용 : 테우, 전통조각배, 목조카약 운영 및 계류장 65㎡ 설치

- 시설물 설치 : 효돈천 내 계류장 65m²(보행로 2m×20m, 승선장 5m×5m)
- 시설물 운영
 - 운영방법 : 서귀포시가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등에 전통수상체험사업 운영권을 1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관리 감독은 서귀포시의 해양수산과에 수행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천점용허가(서귀포시 건설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서귀포시 도시과)
 - 운영시간 : (하절기) 08시~19시, (동절기) 09시~18시
 - 운영범위 : 탑승장에서 최소각 상류쪽으로 약 280m(왕복 560m)
 - 테우(1대, 21명 탑승, 탐방시간 왕복40분, 요금 1인당 10,000원)
 - 전통 조각배(8대, 2인 탑승, 탐방시간 30분, 요금 1인당 10,000원)
 - 목조카약(8대, 2인 탑승, 탐방시간 30분, 요금 1인당 10,000원)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매표소, 승선대기소, 화장실, 주차장은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물 설치는 없음

○ 안전관리계획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트 2대, 안전요원 2인 상시 배치하여야 하나 안전보트 3대, 안전요원 3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전통테우 운영시 하천 중심에 로프 1줄을 설치하여 선장이 손으로 끌어서 운행
- 기상청 일기예보를 주시하여 풍속, 강우량의 변동에 따라 운행 중지

○ 허가기간

- 설치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8.30.까지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최소각 효돈천 문화재구역 내에 전통수상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고 테우, 전통조각배, 목조카약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6년 11월 문화재위원회 신청사항에는 최소각의 모래사장 위에 몽골텐트로 만든 매표소 등 임시시설물이 있었으나 금회 신청사항에는 하천 진입 전 도로와 인접된 기존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하여 매표소, 승선대기소, 주차장, 화장실을 사용함으로 추가 시설물 설치는 없으며, 운영권자(*****, ***)에서 서귀포시가 관리감독하는 위탁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당초 신청(안) 테우 1대, 수상자전거 10대, 투명카약 10대(총 21대) 운영에서 금회 신청(안) 테우 1대, 전통조각배 8대, 목조카약 8대(총 17대)로 체험시설을 20% 감소하여 신청한 사항임. 따라서 전통수상체험사업이 제주 서귀포 쇠소깍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금회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5.17.)

- 본 사업은 쇠소깍 효돈천 문화재구역 내에 전통수상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고 테우, 전통조각배, 목조카약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쇠소깍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인 동시에 제주도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경관이라는 가치를 지지고 있는 명승이나, 현재 쇠소깍의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금번 전통수상체험사업은 쇠소깍의 유산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 쇠소깍이 있는 효돈천은 분출시기가 다른 두가지 용암의 경계부에 발달하는 하천이다. 한라산조면암 상부에 시오름조면현무암 용암이 흐르면서 그 경계부에 형성된 유로가 하효동에서 바다로 유입되면서 쇠소깍을 형성한다. 하구 서측 해변은 조면암 암반 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동측 해변에는 효돈천에서 공급되는 사력으로 소규모의 해빈이 발달되고 쇠소깍 하구 하안에는 사력 퇴적층이 발달한다.
- 따라서, 이 해빈은 쇠소깍의 명승 경관의 일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해빈에 비록 임시 시설이라고 하나 매표소나 계류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공동 유산인 명승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판단된다.
- 아울러,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의 명승적 가치를 반영한다면, 수상자전거, 카약과 같은 이동수단은 명승적 가치와 조화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 본 사업은 공유수면 모래사장이기는 하지만 문화재구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테우의 매표소와 계류장, 그리고 수상자전거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쇠소각은 그 자체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인 동시에 제주도 문화를 상징하는 할망당 또는 여드레당에 관한 설화와 전설이 관련되어 있는 문화경관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승임.
-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을 피상적으로 즐기는 탐방객의 태도에 영합하여 탐방객에게 이러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매표소, 그리고 테우 계류장과 수상자전거 선착장은 제각기 몽골텐트와 부표와 같은 임시시설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질적 경관의 침입을 야기함으로써 해당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쇠소각은 제주올레길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작점에 해당되어 올레길을 따라 걷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테우나 수상자전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차분히 감상하고 체험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 제주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상응하는 시설의 정비를 구상하고 실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바. 의결사항

- 보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3.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용머리관광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8년 제3차·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3.28./2018.4.25.)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부의한 사항임.
 - 보류사유
 - 제3차 : 용머리해안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설계필요
 - 제4차 : 키가 큰 나무 중 수관이 넓은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시설 차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 오수관 매설의 타당성은 재검토
 - 보완사항
 - 식재 계획 변경 및 화장실 오수관 매설 계획 삭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번지
 - 지정일 : 2011.1.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용머리관광지 공원조성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3-2번지
 - 사업내용 : 수목식재, 산책로·야외무대 등 시설 설치
 - 면적 : 7,911m²

구분	제4차 심의 (2018.4.25./보류)	금회 신청	비고
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교목·관목 2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실잣밤나무 5주, 종가시나무 8주, 참식나무 5주, 호랑가시 나무 8주 ○ 낙엽교목 1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죽나무 8주, 자귀나무 8주 ○ 상록관목 180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나무 600주, 까마귀쪽나무 300주, 동백나무 300주, 아왜나무300주 ○ 낙엽관목 30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노리나무 300주 ○ 역사과종 2,728.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교목 98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가시나무31주, 참식나무20주, 아왜나무25주, 후박나무22주 ○ 낙엽교목 2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감주나무10주, 참빗살나무13주 ○ 상록관목 155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나무 600주, 까마귀쪽나무 300주, 돈나무200주, 동백나무300주, 호랑가시나무 150주 ○ 낙엽관목 30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장나무 300주 ○ 역사과종 2,728.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종변경 ※수종은 국립환경과학원 식생조사표 남제주군 안덕면, 대정읍, 색달동 조사지역표 참조 자생수종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H: 8.8m, L: 18.7m) : 44단, 현무암판석 ○ 계단안전난간(H:1m, L:18.7m) *2 : 목재 ○ 산책로(W:2.0m, L:159.1m) : 현무암판석 ○ 경계석(L: 334.4m) : 현무암 ○ 평 벤치(목재) ○ 시설안내판(현무암) ○ 야외무대(213.3m²) : 현무암판석 ○ 야외무대가벽(H: 0.8m, L: 32.7m) : 현무암판석 ○ 스탠드(L: 26m) : 미송 ○ 오수관(Φ150PE) : 130m, ○ 오수맨홀(1.2m×1.2m×1.2m)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H: 8.8m, L: 18.7m) : 44단, 현무암판석 ○ 계단안전난간(H:1m, L:18.7m) *2 : 목재 ○ 산책로(W:2.0m, L:159.1m) : 현무암판석 ○ 경계석(L: 334.4m) : 현무암 ○ 평 벤치(목재) ○ 시설안내판(현무암) ○ 야외무대(213.3m²) : 현무암판석 ○ 야외무대가벽(H: 0.8m, L: 32.7m) : 현무암판석 ○ 스탠드(L: 26m) : 미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관 및 오수맨홀 삭제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5m 이격(1구역, 3구역)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참고사항	○ 제1구역의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에서 약 5m 이격된 1, 3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5.17.)**

- 돈나무 추가는 적절함. 자귀나무 대신 선정된 모감주나무는 경관적으로 아름다우며 해안식재에 적합하고 제주도내 식재도 하고 있으나 제주자생 식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보리장나무와 보리수나무는 동일한 속이지만 별개의 나무이므로 구분이 필요함. 동일한 나무만으로 300주를 심는 것은 자연식생 및 경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2018년 4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8.)**

-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은 지질학적인 가치 외에도 경관적 가치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이며,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머리 쪽에서 바라본 산방산의 경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이 지역은 자연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공원조성으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목은 제주도 자생종으로 식재하고, 도로 쪽으로는 차량의 통행이 보이지 않도록 수목의 높이를 고려해야 할 것.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8.)**

- 용머리 관광지 공원조성 공사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원지형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 및 생태적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임.
- 금회 변경 제시된 계획은 기존 계획보다 도로의 차폐를 위한 식재가 개선되었으며,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향후 경관관리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그러나 공원 조성 후 수목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책로가 시각적으로 노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주변 녹화를 보완할 것.

<2018년 3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 용머리해안은 제주도 수성화산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지질유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임. 부근에 함께 위치하는 산방산은 용머리와 함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변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설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산방산 쪽의 도로와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친화적 설계가 필요. 특히 이곳에 설치할 암석은 제주도에 산출되는 화산암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 신청 사업은 용머리해안 지역 관광지내 수족관 부지를 매립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향은 바람직함.
- 주변 지역으로부터 경관적 노출이 심한 지역으로 공원 조성 시 섬세한 경관관리 계획이 필요하지만, 북측에 인접한 10m 도로의 차폐계획, 경관을 고려한 식재 및 시설 계획이 미흡함.
- 경관조형설계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설계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도로 예정노선 승인 및 시추조사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식만 ~ 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공사 노선승인 및 시추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식만~사상간 도로 예정노선 승인 및 시추조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2017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심의(2017.8.30.)에서 부결된 바 있고, 2018.1.22. 재차 동일 건으로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가 전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용역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후 검토하기로 함 (참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한 용역 중 2018.4월~10월)
 - 부결사유 :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필요성, 노선의 적합성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조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부적합함
- 2018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4.25.)에서 문화재 영향검토 부분을 다소 보완하여 신청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보류'함
 - 보류사유 : 사업예정 노선 승인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후 검토하며, 노선 승인과는 별개로 '시추조사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필요
 - * 금번 현지조사 시 *****에서는 4월 시추계획 68공을 금번 56공으로 일부 축소 제시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시추조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식만~사상 간 도로 예정노선 승인 및 지반조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및 삼락동 일원
- 사업내용 : 식만~사상 간 도로공사 예정노선(8.24km) 승인 및 시추조사
 - 사업규모 : 장대교 3개, 소교량 4개, 램프교 7개, 교차로 3개, 토공 166만㎡ 등
 - 시추공사 : 총 68공 (서낙동강 19공, 평강천 8공, 낙동강 일대 41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8.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문화재구역, 1~5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제1구역	○ 개별 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제5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심의함.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 금회 사업구역은 도로 예정노선 길이 8.24km, 왕복 4차로, 폭이 20m에 달하는 사업이며, 문화재구역과 주변 허용기준 1구역~5구역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노선의 상부(약 3km)의 문화재구역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조사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임을 고려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고, 전반적이고 환경 인자별 분야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현지조사는 노선승인 여부는 별건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구역에 대한 시추조사로 인한 영향검토를 전제로 한 것임.

구분	신청당시(4.10.)	현지조사(5.16.)	최종 검토안
서낙동강 구간	19	15	13
평강천 구간	8	8	8
낙동강 구간	41	33	15
지반조사 합계	68공	56공	36공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금회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의견 / 2018.5.16.)**

- 본 건은 낙동강 지역의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공사 노선 승인 및 시추조사를 위해 신청한 건임
- 이 사업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편 환경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예정 노선 구간에서 계획된 시추조사가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추조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시추공수는 환경평가 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정 노선승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차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문화재위원 의견 / 2018.5.16.)**

- 본 신청 건은 식만 - 사상간 도로를 건설하고자(8.24km) 예정 노선 승인 및 시추 조사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임.
- 이와 관련 부산시 발표자료("18.4.25, 10쪽)에 따르면 낙동강하구모니터링("15~'16)에서

사업 예정구간 중 서낙동강지역은 87종의 조류(22,404개체), 낙동강지역은 78종(14,306개체)가 확인되어 사업구간 주변의 조류 서식 분포를 이루고 있고, 사업구간 전체에서 천연기념물은 6종이 확인되고 있음(발표자료 12쪽).

- 또한, 사업 예정 구간 중 서 낙동강지역 및 낙동강지역은, 낙동강하류 조류 분포 전체의 11~19%를 차지하고 있고(부산시 자료 8쪽), '17년 조사의 경우 그 전 년도들('15,'16)의 11%보다 더 증가된 19%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여러 종의 조류가 11~19%의 범위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이 조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본 도로건설사업이 철새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번에 신청된 시추조사는 환경영향 평가의 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 및 그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 지며, 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문화재 구역은 반드시 포함하되 최소한의 시추공수로 제한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도로 건설사업이 낙동강 하류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의견 / 2018.5.16.)**

- 본 건은 낙동강 지역의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공사 노선 승인 및 시추조사를 위해 신청한 건임.
- 이 사업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편 환경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예정 노선 구간에서 계획된 시추조사가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추조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식만-사상간 도로노선 위치도



□ 식만-사상간 도로노선 사업상세 현황도



□ 식만-사상간 도로노선 시추조사(서낙동강 4차 위원회 19공→ 금번 검토 13공)

● 서낙동강 일대(사상구 13공 ; NBB-1~13)



● 낙동강 일대(강서구 8공; NBB-28~36)



□ 2018.4월 문화재위원회 시 부산시 설명자료 중(김용준위원 의견서 관련)

01 | 조류분포조사

III 문화재(철새) 영향성 검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개체수 및 유형별 현황

(자료 : 현지조사(1~4차),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2015~2017)

- 사업구간은 3만여 개체로 낙동강 하류 전체 철새도래지의 약 14% 미만의 조류만 서식
- 을숙도 일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하류는 사업구간의 4.5배(약 60%) 이상 조류가 서식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A : 서낙동강 B : 낙동강 C : 상류
D : 서낙동강 하류 E : 낙동강 하류, F : 하구

사업구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연도별	사업구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총합계
	서낙동강 A	낙동강 B	상류 C	서낙동강 하류 D	낙동강 하류 E	하구 F	
2015	16,357 (7.9%)	7,516 (3.6%)	22,937 (11.1%)	35,094 (17.0%)	55,855 (27.0%)	69,058 (33.4%)	206,817
2016	15,116 (7.8%)	6,176 (3.2%)	19,697 (10.1%)	31,348 (16.1%)	57,262 (29.4%)	64,975 (33.4%)	194,574
2017	17,755 (11.5%)	12,134 (7.9%)	22,209 (14.4%)	18,645 (12.1%)	49,956 (27.8%)	40,586 (26.3%)	154,285
총합	22,382 (8.2%)	14,121 (5.1%)	30,263 (11.0%)	42,407 (15.4%)	70,413 (25.6%)	95,015 (34.6%)	274,601 (100%)

* 최대개체수 : 대상지역의 각 조류종이 가장 많이 관찰된 개체수의 합계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8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5.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8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2.28.)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보완하여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 부결사유 : 부지 용도를 재점검하고 중복시설은 공동 이용하여 여유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이 필요하며, 현 체육시설 계획은 철새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38번지
 - 사업내용 :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 / 대지면적 5,330㎡, 실 사용면적 4,953㎡
최고높이 : 스쿼시경기장 9.5m, 어린이 물놀이시설 6m

※ 북측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녹지부분에 추가적인 띠 녹지 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
(조경면적 증가 : 기존 480㎡ → 변경 778.49㎡ / 증 298.49㎡)

구 분	1차 신청 (2018.2.28./불허)	금회 신청 (2018.4.17.)	비고
스쿼시전용경기장	893.72m ² (지하1층 지상2층)	998.53m ² (지하1층 상2층)	증 104.81m ²
어린이 놀이시설	1,600m ²	1,700m ²	증 100m ²
주차 면적 축소	17대	10대	감 7대
족구장 2면 삭제	실외 족구장 2개소	-	감 2개소
녹지면적 (외곽차폐림 조성)	480m ²	778.49m ²	증 298.49m ²

○ 사업기간 : 2018.7.1.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구역은 을숙도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농구장, 족구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운동장에 상당한 규모의 스쿼시장과 물놀이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녹지공간 확보 등을 보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20.)

- 사하구청에서 을숙도체육시설부지(문화재구역 내)에 스쿼시전용경기장을 신축 조성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재 조성하여, 국내외의 스쿼시 경기대회 유치, 생활스쿼시 저변확대, 가족친화형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육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대상지는 현재 농구장·족구장·어린이놀이시설이 입지하며 시민들이 무료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부지 북측 인접부지는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가 조성 중에 있음.
- 당초 검토계획에 비해 주차장 면적 축소(17→10대)와 족구장 2면 삭제, 외곽 차폐수림대 조성을 통해 녹지면적을 480m²→778.49m²로 변경하여 신청되었음.
- 스쿼시경기장의 벽면과 지붕판넬은 빛 반사가 잘되지 않는 재질로 선정하고, 색상은 원색계열을 피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한다면 사업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018년 2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2.5.)

- 본 사업지는 문화재 지정구역 내 구성되어 있는 체육시설로 현재 야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임.
- 또한 본 신청 지역과 접하는 지역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건립 예정이며, 여가부 사업을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였고 센터를 허가하면서 인근의 축구장 등 운동시설 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운동 시설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허가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사하구가 신청한 스쿼시경기장 등 조성 계획이 청소년센터 조성 계획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이번에 신청한 현상변경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사하구가 추진 중인 사업이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운동시설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2.13.)

- 사하구청에서 을숙도체육시설부지(문화재구역내)에 스쿼시전용경기장을 신축 조성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재 조성하여, 국내외의 스쿼시 경기대회 유치, 생활스쿼시 저변확대, 가족친화형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육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대상지는 현재 농구장·족구장·어린이놀이시설이 입지하며 시민들이 무료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부지 북측 인접부지는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가 조성 중에 있음.
- 실내 스쿼시경기장 건물규모(지하1층 지상2층)는 837.41㎡(41.4m×18.8m×9.5m(높이)), 신설 물놀이장 면적은 540㎡로 시설물 최대높이는 6.954m로 인접한 청소년체험센터의 운영센터(16m), 지도자생활관(12.1m), 체험관(9.7m) 등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임.
- 스쿼시경기장의 벽면 알루미늄 판넬과 지붕판넬(흰색)은 빛 반사는 물론 색채경관이 어울리지 않는 점, 스쿼시경기장, 물놀이시설 모두 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부속 시설물이 중복되어 있고 또한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신, 구 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점, 주차장이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점, 을숙도체육시설 부지(문화재구역) 내의 건물밀집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차제에 을숙도

체육시설부지 전체에 대하여 부지별 용도를 재점검하고 중복 또는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 또는 공동이용토록 하고 여유 부지는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낙동강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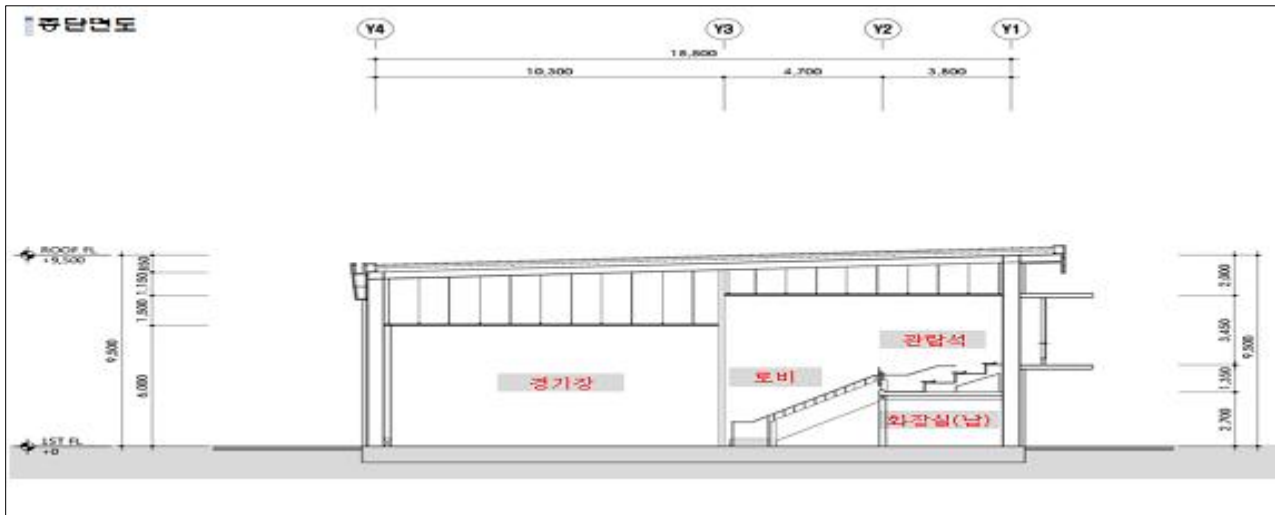
□ 을숙도 종합관리계획과 계획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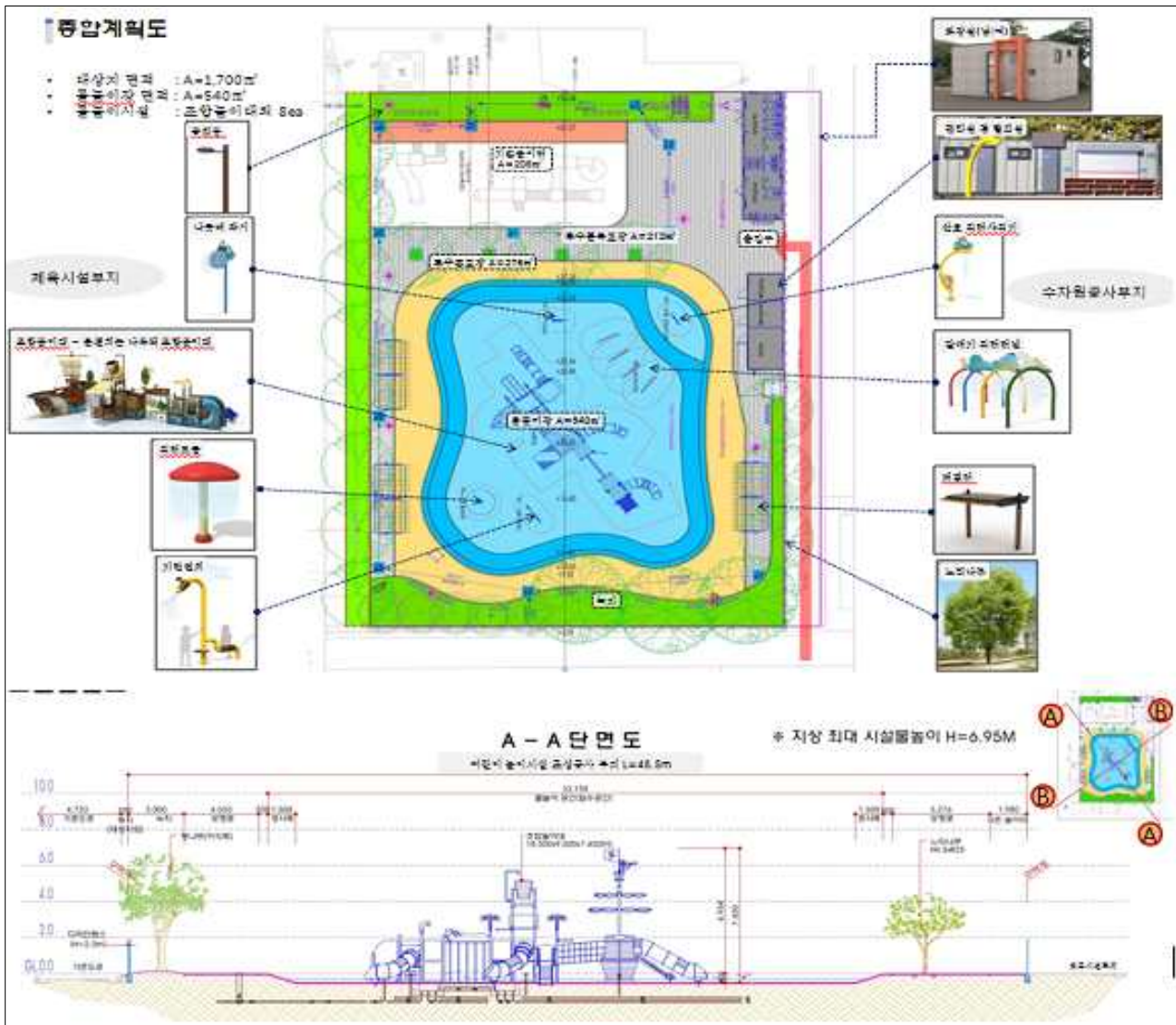
□ 신청대상지 내 건물 등 배치도



□ 스쿼시장 종단면도(높이 9.5m)



□ 기존 놀이터와 신설 물놀이장(최고높이 6m)



□ 2018.2.월 신청 배치도



□ 금회 수정된 배치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명, 조건부가결 8명, 부결 1명

6.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위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본 건은 2018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4.25.)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관계전문가 3인의 현지조사(2018.5.14.)를 거친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 보류사유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7.6.
- (3) 신청내용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4) 신청사유
 - 문화재 지정당시 주민동의 절차 및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지정 등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강화군 면적 약 411km²에 비해 문화재 지정면적이 약 435km²(유지부 2,380m², 해역부 435km²)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약 39km²에 달하고 있어 현실에 부응하는 허용 기준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2구역(보존대상)은 현행 유지하고, 3구역 중 농경지는 문화재로부터 200m, 그 외 지역은 100m까지로 조정을 원하며, 석모도 북단의 기존 고시

오류의 정정과 신규지번 발생에 따른 국가어항 부분 활용을 위해 일부 구역해제를 신청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을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 구역별 문화재구역과의 거리 (※ 3구역 축소)

- 현 행 : 1구역 20m, 2구역 50m, 3구역 300m, 그 외 4구역
- 조정안 : 1구역과 2구역은 현행유지, 3구역 150m, 그 외 4구역, 다만 3구역 중 저수지 등 먹이활동에 유익한 습지지역은 300m로 현행유지

구분	신청 당시(4.4)	문화재청 조정안
농경지	문화재구역 ~ 100m	문화재구역 ~ 150 단, 습지형태의 지역은 현행유지
농경지 외	문화재구역 ~ 200m	
석모도북단 오류정정	오류 정정 필요	정정 완료 (관보고시 5.11.)
국가어항	신규지적 반영 및 어항부근 일부 해제 요청	1,2구역 현행유지, 3구역은 문화재구역 ~ 150m 적용

라. 검토의견 (***)**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2구역/3구역의 공간 범위를 각각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50m/300m에서 20m/50m/150m로 조정하고자 하며, 여차리 물팡지역이나 불음도의 저수지와 같이 저어새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습지 형태의 지역은 3구역을 현행(300m)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금회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5.14.)

- 이번 현상변경 건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검토로, 강화군은 1구역/2구역/3구역의 공간 범위를 각각 20m/50m/300m에서 20m/50m/150m로 조정해주기를 원하나 여차리 물뚝지역이나 불음도의 저수지와 같이 저어새의 이용 빈도가 높은 습지 형태의 지역은 3구역을 300m로 현행의 공간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저어새의 이용 빈도가 낮고 갯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지나 경작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3구역을 현행 300m에서 150m로 축소하는 것이 집단 민원의 강도를 줄이고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갯벌의 훼손을 초래 할 수 있는 오폐수나 토사의 유입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2018년 4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0.)

- 2000년 7월 강화도 지역의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되었는데 단일 문화재 면적으로는 국내 최대이고, 강화도 갯벌의 보호구역 지정이후 저어새의 번식쌍수는 '06년 183쌍에서 '17년 489쌍으로 각각 2.7배 증가하였고 국내 번식 저어새 개체군의 53%가 강화보호구역내에서 번식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나, 2000년 지정 당시 마을이나 도로, 농경지, 숲 등 지역 환경과 토지이용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용기준을 정해서 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허용기준의 조정 건은 핵심지역인 1, 2구역은 조정되지 않고 3구역, 4구역의 조정과 신규지적 등록, 기준안 오류지역의 정정 등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니 만큼 최소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현상변경 기준안을 수용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되지만 문화

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0.)**

- 강화도갯벌 지역은 저어새 번식지로 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역임. 또한 저어새 번식에 필요한 지역은 현재도 보전이 필요하고 훼손이 방지되어야 지속적인 철새의 도래를 유지할 수 있음
- 강화갯벌 문화재 보전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새로이 변경을 통한 3구역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금년 여름에 저어새 번식과 도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동안 축적된 저어새 번식지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8.)**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는 계속적인 개발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근래 강화 본섬과 석모도의 대교가 개통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문화재 구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됨.
- 석모도 북단 하리 끝부분의 오류정정과 공통사항의 추가항목 보완 정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남단의 국가항(어류정항) 부근은 문화재 허용기준 1,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함은 문화재보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현재 문화재로부터 300m까지의 3구역을 100~200m로 축소하는 것은 문화재 지역의 심각한 영향과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조류서식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며, 갯벌 보존 차원에서 조류·갯벌 전문가가 참여한 구체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해 보임.
- 관할 자치단체에서 문화재구역 보존방안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된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8.)**

- 수도권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의 교동도와 석모도는 연륙교가 건설되어 해안가는 현재에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많은 개발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현상변경에 대한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강화 갯벌은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갯벌이라는 지질·지형학적인 가치도 매우 중요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해안경관을

엄격히 보전·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해안선을 따라 설정된 지정구역 경계선이 현재의 해안선 즉, 간척사업으로 쌓은 축대(석축)와 일치하지 않아, 현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나 용역을 실시하여 각 지역여건에 맞도록 차별성 있게 조정되어야 함.
- 석모도 하리의 ‘기준안 오류 고시지역 정정’은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前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8.)

- 허용기준 조정안을 전부 동일 수용하기보다 일부 수정과 재검토가 필요함. 3구역 허용 기준을 100~200m로 축소한다고 해도 갯벌에 주 서식하는 저어새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300m 안쪽까지 저어새가 많이 이용하는 화도면 여차리 양식장 (물광 포함)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확대된 4구역 중 일부 지역에 향후 건축물 난립 시, 고도와 색채, 오염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 검토가 필요함. 무엇보다 산지와 농경지의 기준을 100m 달리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음. 저어새가 해안뿐 아니라 2km 이상 내륙 쪽 논을 이용하기도 하며, 논이 유무보다 봄철 물을 대는 정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농경지라는 이유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삼산면 기준 오류고시지역에 대한 정정은 속히 필요하며, 국가어항 신규지적에 따른 기준안 재조정은 우선 필요할 것임. 항구 주변 수심이 깊고 저어새 이용이 어려워 변경이 타당할 것임. 다만 국가어항에 인접한 지역을 모두 1, 2, 3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형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해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이 요구됨.
- 천연기념물 범위에 벗어나나 저어새 번식지로 이용되는 상여바위, 각시암 등에 대한 범위 추가안, 혹은 번식섬 조성 등의 보전 개선방안을 포함하면서, 허용기준 축소가 필요한 지역을 조정, 완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0.)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에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갯벌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이 계속 훼손되어 왔으며, 근래 강화 본섬과 석모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되어 앞으로는 더더욱 훼손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지정구역으로부터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3구역을 100~200m로 축소하는 것은 문화재 지역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기존의 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통사항의 추가항목은 채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5.)

- 강화갯벌 일대의 저어새는 지속적인 번식지 개선노력(알자리 조성, 등지재료 보강 등)에 힘입어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안 일대의 곳곳에서 이루어진 부분적 개발행위(산림벌채, 건물신축 등)에 따른 서식 방해요인의 증가로 인해 저어새의 분포지역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인위적 방해가 비교적 덜한 강화도 남단과 교동도 북부로 집중화되는 불안정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신청 조정안 중 3구역 허용기준의 일부 축소 조정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허용기준 공통사항 변경내용과 기준안 오류고시지역 정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허용기준 비교

현행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문화재~20m)	▪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좌동	좌동	좌동
2구역 (20~50m)	▪ 건축물 최고 높이 5m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이하 (1층 이하)	2구역 (1구역~50m)	▪ 건축물 최고 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이하
3구역 (50~300m)	▪ 건축물 최고 높이 8m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2구역~150m) 습지 : 2구역~300m	▪ 건축물 최고 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300~500m)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4구역 (3구역~500m)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 사항	(추가) ◦ 토사 및 오폐수로 깎벌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은 개별심의	

□ 강화깎벌 및 저어새 번식지 허용기준 검토안 요약

- 층수개념 삭제
- 현행유지 : 1, 2구역, 3구역 중 여차리 물땡 등 습지 지역 현행 유지(문화재 ~ 300m)
- 완화구역 : 현재 3구역(문화재 ~ 300m → 문화재 ~ 150m)
- 신규지번 등록지, 국가어항 주변은 1,2구역은 현행유지 및 3구역 조정안 반영 (문화재구역 ~ 150m)
- 공통사항 내 성·절토와 위험물, 축사 등 오염시설 개별심의 사항 추가
- 토사 및 오폐수로 깎벌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은 개별심의
- 색채, 조경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포함 등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9명, 부결 1명

7.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번지 등
 - 지정일 : 1988.4.30.
- (3) 신청내용 :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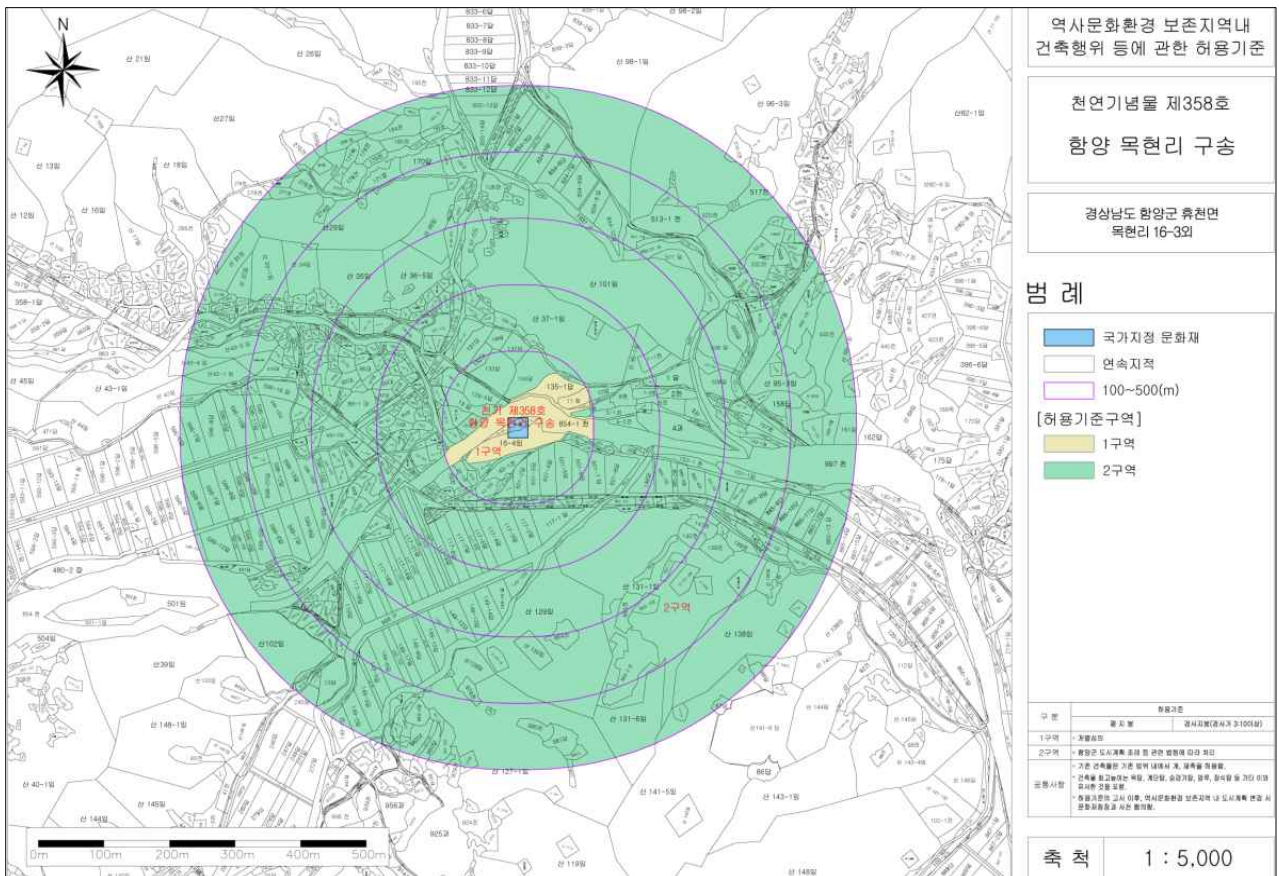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해도 구송 보존관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공통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만 목현리 구송 주변 전, 답 중 함양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1구역으로 편입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안>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경사지붕)
- 3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금번 함양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은 100m 이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구역은 전, 답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목현리 구송 생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목현리 구송 주변 전,답 중 함양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1구역으로 편입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허용기준 공통사항에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토록 추가함이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8.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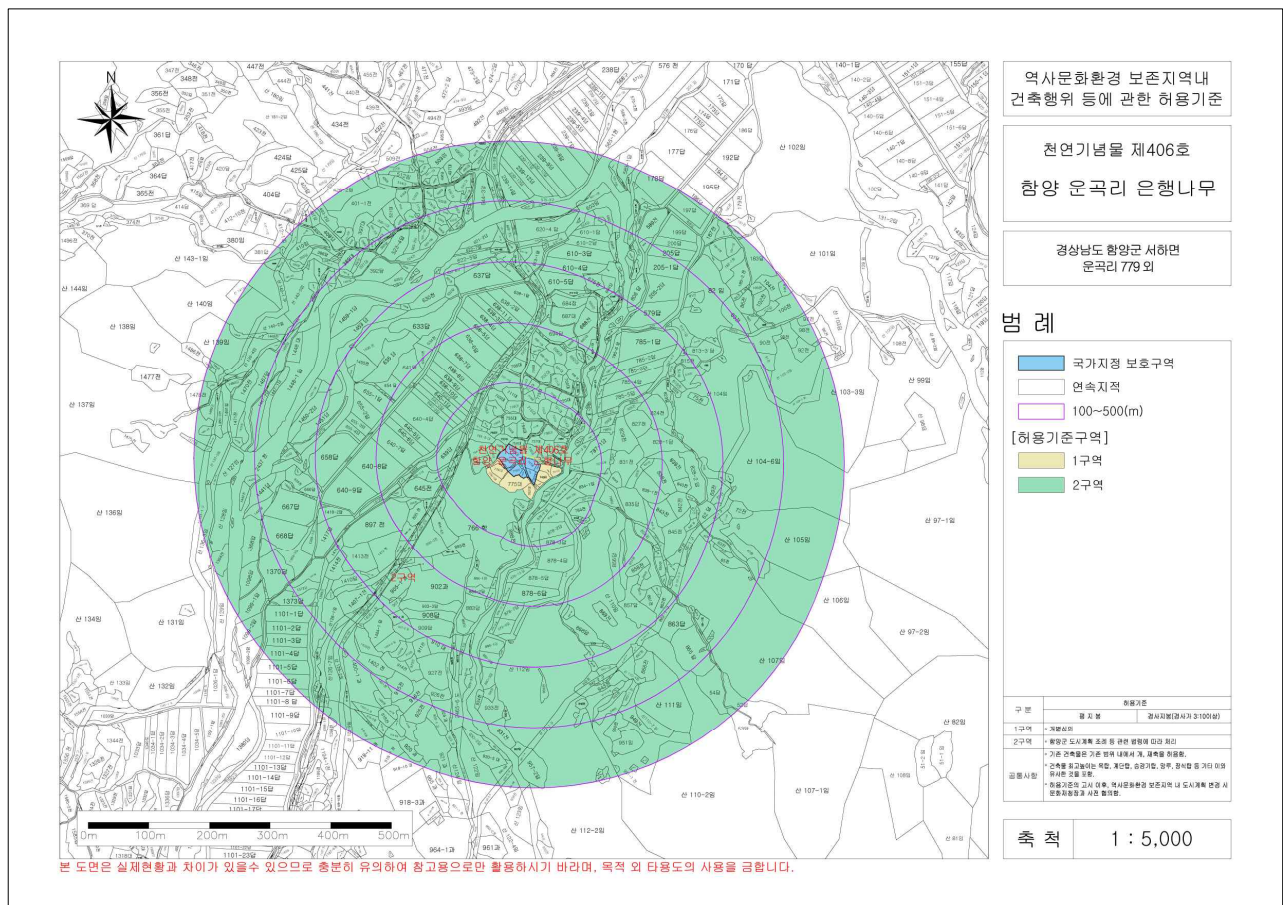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번지 등
 - 지정일 : 1999.4.6.
- (3) 신청내용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기존 건축면적 10% 범위 내 증,개축 허용)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역으로 포함하고 2구역은 함양군에서 신청한 안대로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해도 은행나무 보존관리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공통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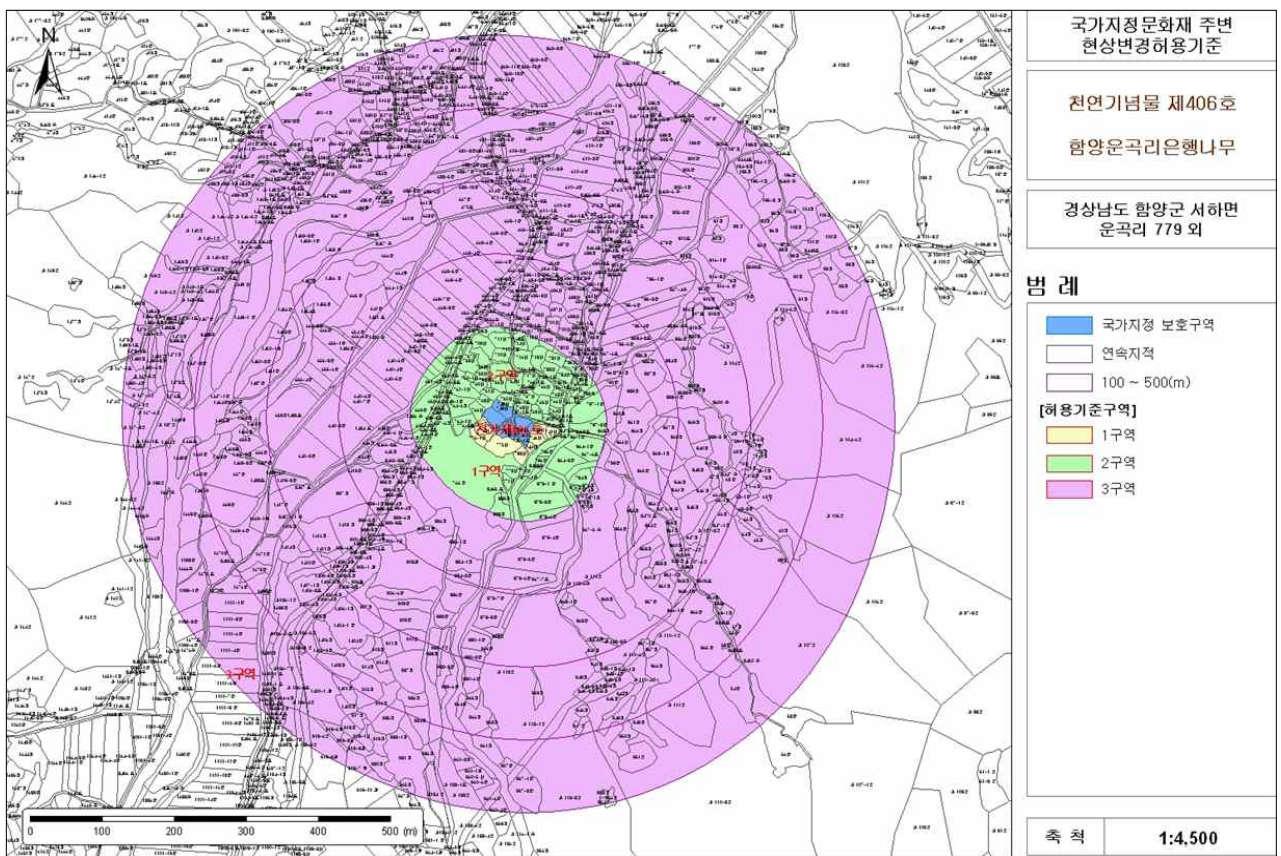
<검토안>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2010.12.3. 고시)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4.)

-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허용기준은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설정하고 100~500m 이내는 3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경사지붕)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경사지붕)

- 3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금번 함양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은 100m 이내 1구역 2층 정도의 규모가 가능한 지역을 개별심의로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조정하고자 신청하였으나, 1구역은 현재 허용 기준 대로 유지하되 은행나무와 인접한 북쪽 길은 1구역으로 포함하고 그 외 지역은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조정해도 은행 나무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9.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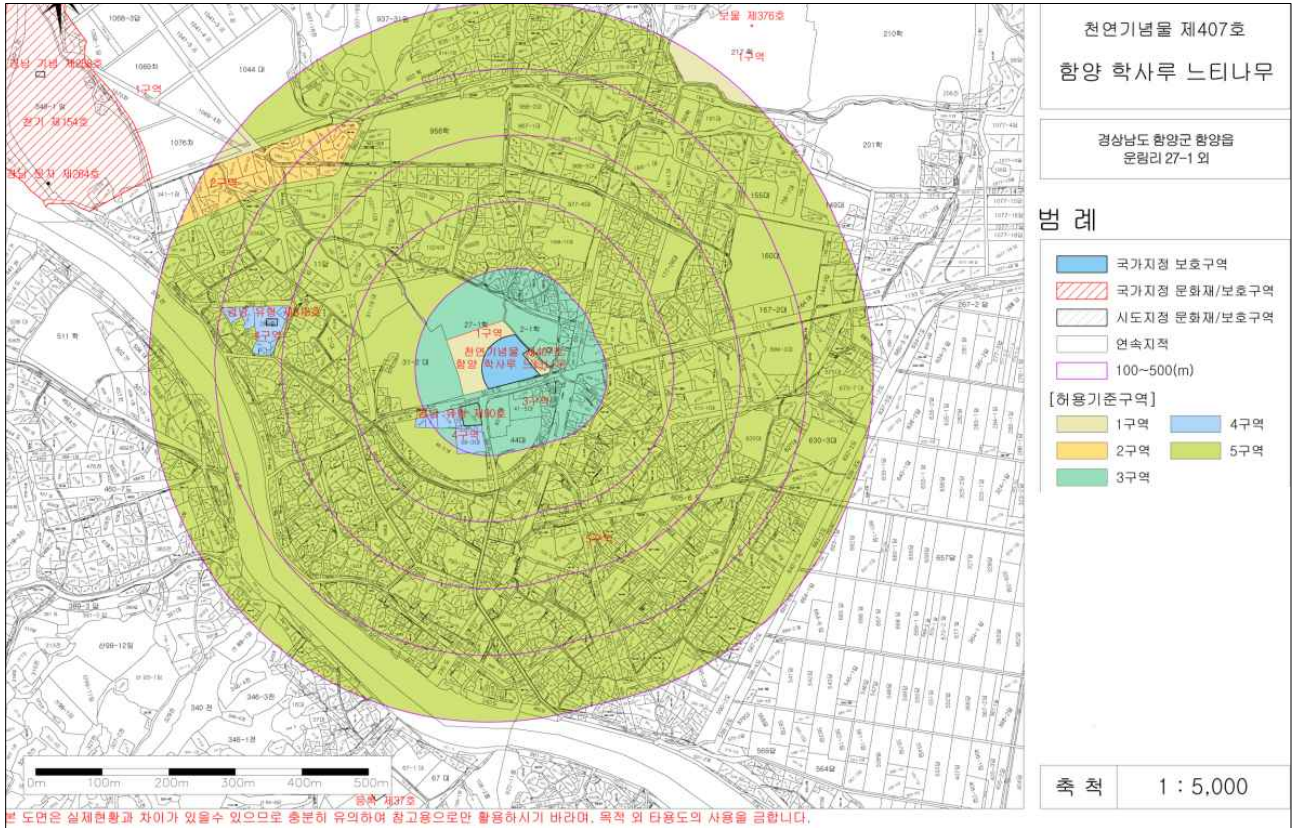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번지 등
 - 지정일 : 1999.4.6.
- (3) 신청내용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조정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4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90호 함양 학사루, 유형문화재 제318호 함양용산사지 석조여래입상) 허용기준을 따름		

- 함양군 신청 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내를 1~3구역으로 세분화 하고, 200~500m 지역은 4~5구역으로 조정하고 공통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조정 신청하였음.
- 1구역은 기 고시된 허용기준 대로 유지하고 유형문화재 제90호 함양 학사루와 제318호 함양 용산사지 여래입상 주변은 4구역으로 평지붕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이하로 조정하고, 1구역과 4구역을 제외한 100m이내 지역은 3구역으로 기 고시된(2구역) 기준을 적용하며, 100m이외 지역은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상 등의 허용기준과 정합시켜 통합 허용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하며, 일부 공통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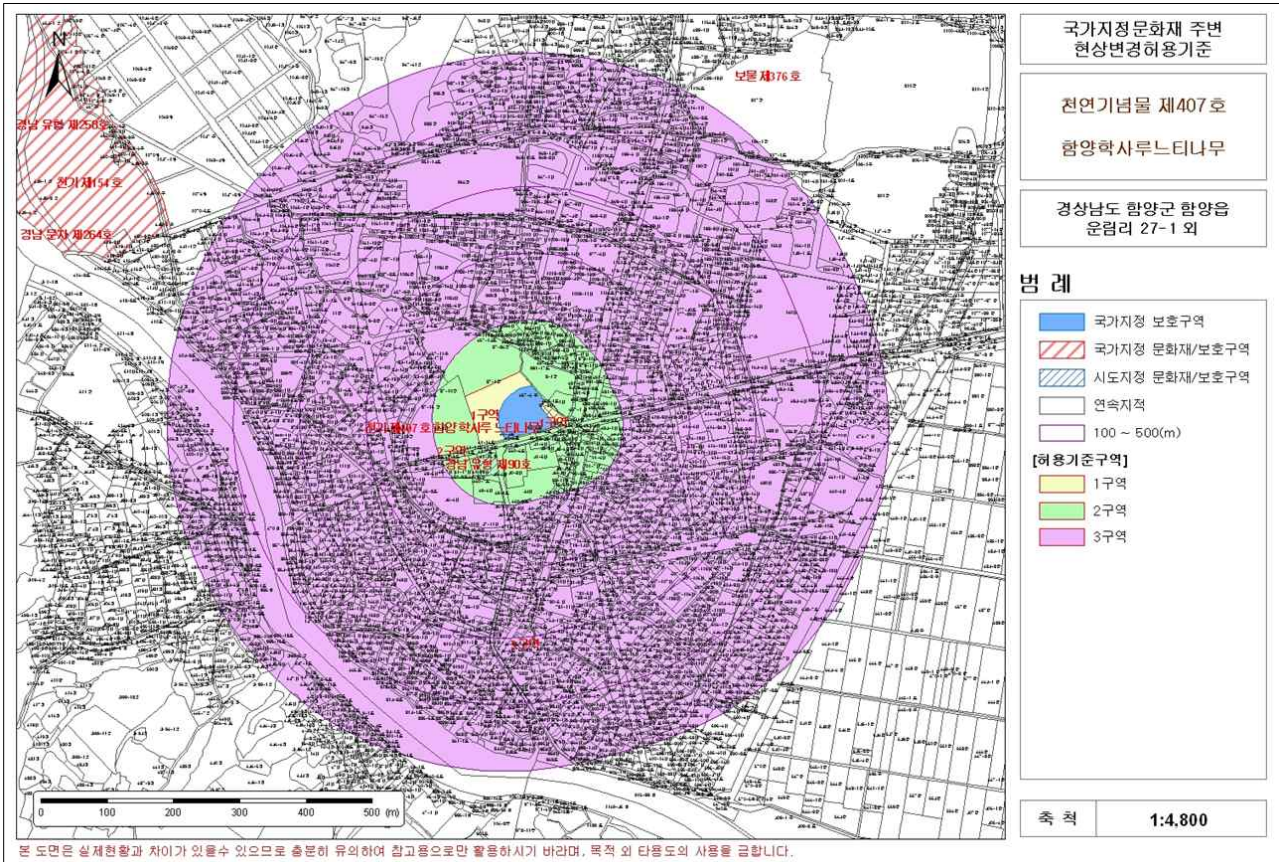
<검토안>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기존구역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2010.12.3. 고시)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3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4.)**

-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허용기준은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설정하고 100~500m 이내는 3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1구역 : 기존 건축물 규모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경사지붕)
 - 3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금번 함양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은 약 200m 이내 지역을 1~3구역으로 세분화 하고 200~500m 지역은 4~5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하였으나, 1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남 유형문화재 학사루 주변은 현재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7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21m 이하를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이하로 조정하며 그 외 100m 이 외 지역은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천연기념물 함양상림, 보물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등의 허용기준과 정합시켜 통합 허용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10.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62호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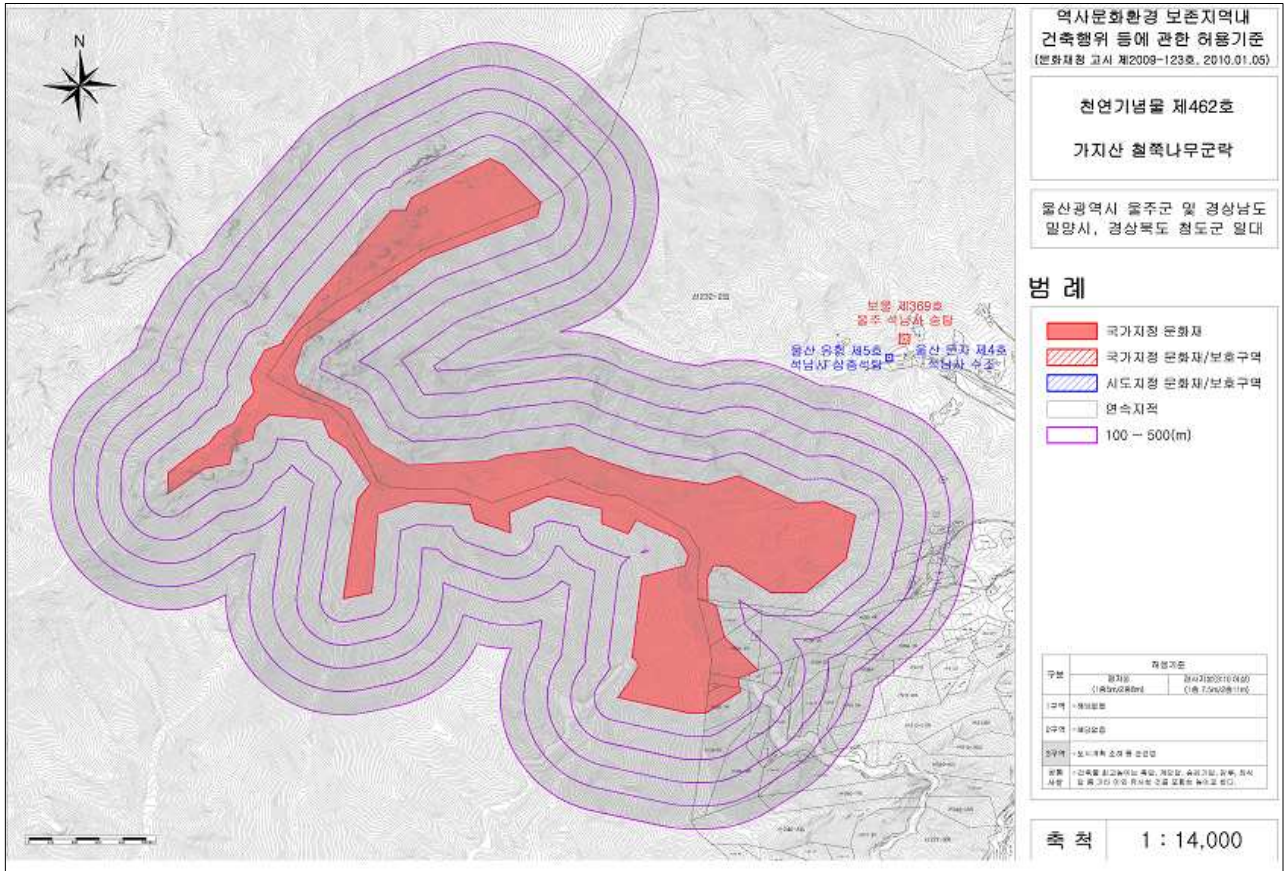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2호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 지정일 : 2005.8.19.
- (3) 신청내용 :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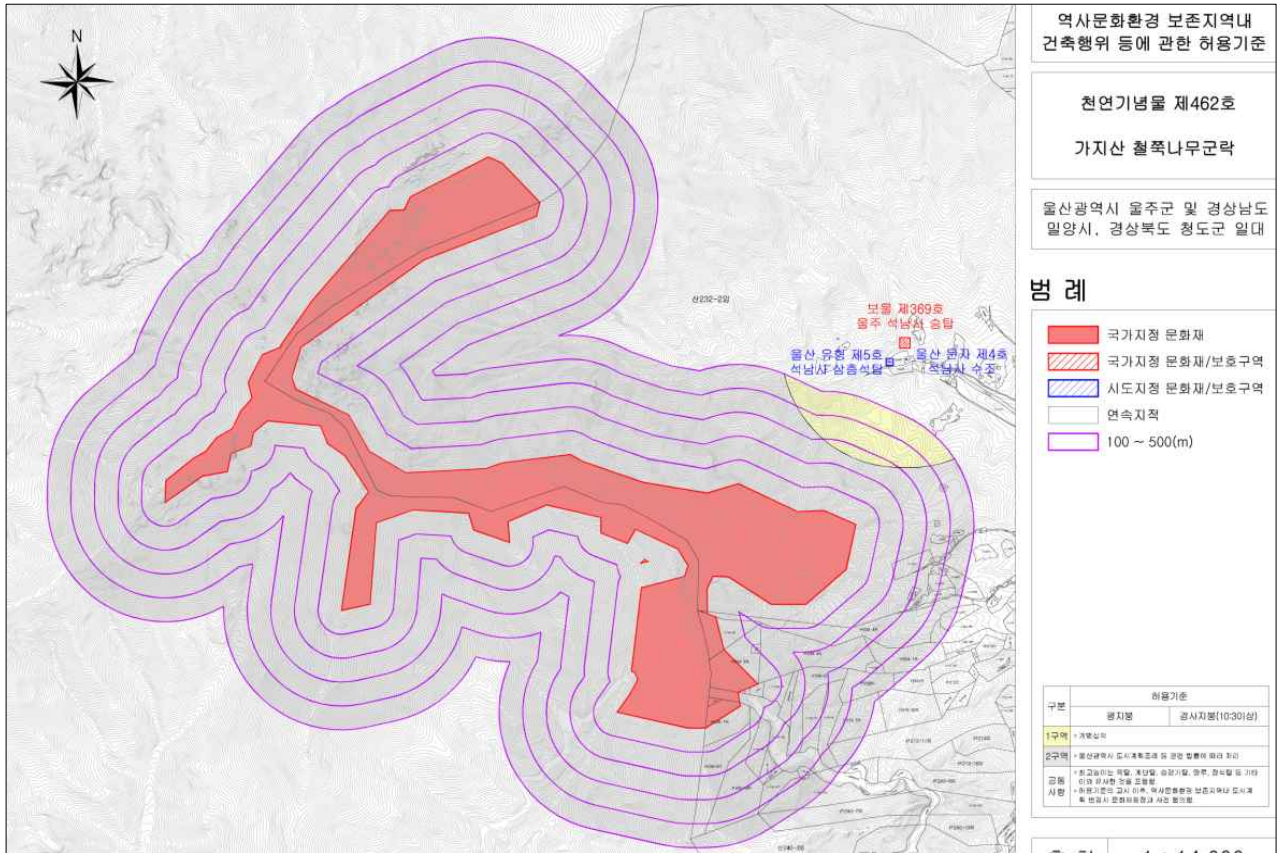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 기 고시된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허용기준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설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3구역을 1구역으로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신청하였음.
- 제출안은 합리적이거나 보물 제369호 울주 석남사 승탑 허용기준과 정합시켜 통합 허용기준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공통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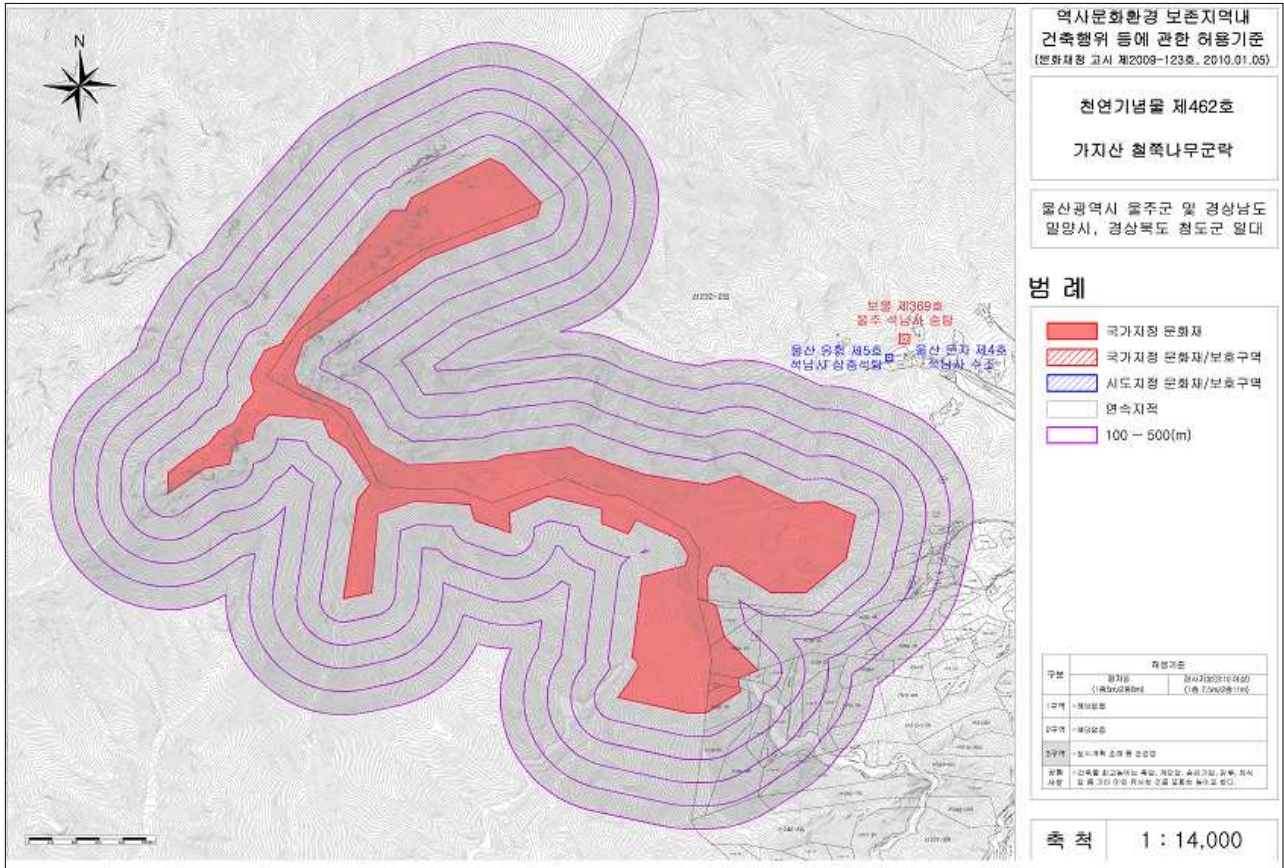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10:3 이상) (1층7.5m/2층11m)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울산광역시·경남 밀양시·경북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마.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2010.1.5. 고시)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10:3 이상 (1층7.5m/2층11m)	
1구역	○ 해당 없음		
2구역	○ 해당 없음		
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0.)

-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허용기준은 문화재구역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를 3구역으로 설정하고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 3구역 :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금번 울주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3구역을 2구역으로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보물 제369호 울주 석남사 승탑 허용기준과 정합시켜 통합허용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11.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가야역사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가야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밀양 만어산 암괴류」 주변 가야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8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4.25.)에서 ‘암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탐방로 노선 등 수정 필요’ 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부의한 사항임
 - 보완사항
 - 암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탐방로 노선 변경, 암반부 앵커보호캡 및 안내판 설치
 - 공원 식재계획 변경 및 기존 계획된 파고라 대신 원두막 설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8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776번지
 - 지정일 : 2011.1.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가야역사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20-4번지
 - 사업내용 : 탐방로, 공원, 주차장 설치

구분		1차 신청 (2018.4.25./보류)	금회 보완	비고
탐방로	구조물 설치	· 데크: L=94m B=1.5m · 자연석계단 : L=93m B=1.5m · 로프울타리(W2.0×H1.2) 95경간	· 데크: L=177m, B=1.5m · 안내판(2.0x1.0xh2.0) 설치 : 1개소 * 암반부 앵커보호캡 설치	· 데크 구간 확대 · 자연석계단 및 로프울타리 삭제 · 암반부 앵커보호캡 설치
	공원	구조물 설치 · 자연석쌓기 : L=28m H=1.5~3m A=50m ² 포장계획 · 자연석포장 : A=290m ² (T=50cm) 식재계획 · 식재 : 배롱나무(H2.5×R8) 12주, 모감주나무(H3.0×R8) 14주 부대시설 · 파고라(6.4×6.4×4.5) : 1개소	· 자연석쌓기 : L=28m H=1.5~3m A=50m ² · 자연석포장 : A=290m ² (T=50cm) · 식재 : 배롱나무(H2.5×R8) 12주, 모감주나무(H3.0×R8) 14주 · 소나무 이식 3주(R40~50) · 원두막(5.2×3.3×2.9) : 1개소	· 소나무 이식 추가 · 파고라 → 원두막
주차장	구조물 설치	· 보강토옹벽 : L=177m H=1~5m A=522m ²	· 보강토옹벽 : L=177m H=1~5m A=522m ²	
	포장계획	· 잔디블럭포장(t=42cm) : A=824m ² · 콘크리트포장(t=40cm) : A=42m ²	· 잔디블럭포장(t=42cm) : A=824m ² · 콘크리트포장(t=40cm) : A=42m ²	
	부대시설	· 가드레일 설치 : L=123m · 종합안내판(2.0x1.0xh2.0) : 1개소	· 가드레일 설치 : L=123m · 종합안내판(2.0x1.0xh2.0) : 1개소	
	수목제거	· 낙우송 2본, 서어나무 9본, 산벚나무 2본	· 낙우송 2본, 서어나무 9본, 산벚나무 2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5.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134m 이격(2구역)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밀양 만어산 암괴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4m 이격된 2구역에 탐방로,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5.14.)

- 탐방로 설치 관련 변경 계획(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암괴류가 교란된 지역을 대상으로 탐방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보호 대상 암괴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탐방로 구간과는 별도로, 주차장과 연계된 공원 조성 지역에 만어산 암괴류를 소개하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내판의 위치 선정과 문안 작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2018년 4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3.)

- 탐방로 개설이 계획된 구간에는 암괴류가 연장하여 분포되어 있으나, 탐방로 개설이 암괴류의 원지형이 교란되어 있는 외곽 경계부를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지역 암괴류의 자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탐방로 하부 구간은 원지형이 교란되어 있는 대나무숲(조림) 지역을 따라 개설하고, 상부 구간 또한 원지형이 교란되어 있는 암괴부 북측 경계부를 따라 개설되어야 함.
- 탐방로 초입부 데크의 경우, 데크의 앵커는 가능한 한 암괴들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탐방로 일부 구간의 돌계단과 탐방로 주위에 설치가 계획된 돌담은 이 지역 암괴류의 자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탐방로 초입과 중간부에 암괴류의 지질지형적 특성과 자연유산적 가치를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 등을 이용한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함.
- 주차장 개설의 경우 만어사 진입 도로와 연결해 있는 식생 분포지로, 성토에 의한 주차장 조성이 만어사 암괴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차장 부지 내의 일부 수목(참나무, 소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前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13.)

- 탐방로 개설 예정 구간 중 염소방목장 구간의 탐방로는 암괴류 분포가 적은 도로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암괴류가 분포된 구간은 가능한 한 목재데크로 하는 것이 암괴류 훼손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료됨.
- 데크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터파기를 하지 않고 기존 암괴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암괴와 유사한 색상과 형태로 타설하되, 기존 암괴와 기초콘크리트 사이 분리막을 설치하여 가역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조성 예정지와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 폭이 좁고,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부지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회차와 주차가 가능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3명, 조건부가결 7명

12.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 및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8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4.25.)에서 ‘외부마감재 및 지붕을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 필요’ 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부의한 사항임
 - 보완사항
 - 외부 마감재를 주변 경관에 맞추어 회색 계열 등으로 변경
 - 스테인리스 난간대 삭제 및 콘크리트 난간대 높이 증가, 2동 지붕 경사 변경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번지 일원
 - 지정일 : 1966.6.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199번지
 - 사업내용 : 기존 건물(단독주택·일반음식점) 철거, 단독주택·소매점 신축

구분		1차 신청 (2018.4.25./보류)	금회 보완	비고
주택 (1동)	외관	적벽돌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 선정 (회색 등)	·면적 97.86㎡ ·높이 4.85m
	옥상	스테인리스 난간대(0.5m)	스테인리스 난간대 삭제, 콘크리트 난간대 높이 증가	

			(0.5m→1.2m)	
소매 점 (2동)	외관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 선정)	·면적 32.4m ² ·높이 4.8m
	지붕	지붕경사 (10:3.3) - 높이(1.8m),길이(5.4m)	지붕경사 (10:3) - 높이(1.6m), 길이(5.4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5.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문화재 구역 내 단독주택 및 소매점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5.16.)

- 이전에 신청된 안에서 건물의 외관의 색이나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이 지역에 현대식 건물이 신축되는 것 보다는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 근처의 전통적인 너와집이나 굴피집의 형태로 조성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전형적인 기와집 형태의 한옥가옥의 외장이 바람직함.

<2018년 4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4.17.)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환선굴과 대금굴, 그리고 미개방동굴인 관음굴과 여러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온대 카르스트지형을 보이는 경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경관적 가치도 매우 뛰어남.
- 신청 사업은 기존의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하지만 신축건물은 현대식 건물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근처의 전통적인 너와집이나 굴피집의 형태로 조성하는 편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8명, 조건부가결 2명

13.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번지 일원
 - 지정일 : 1962.12.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41-69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1층) 1동 신축공사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2,000m ²	
건축면적/연면적	90.3m ²	
최고높이	5.24m(지상 1층)	
구조 / 지붕형태	철근콘크리트조 / 경사지붕	
오수처리	침투조(3m×3m×2m) 오수처리시설(6m ³ /일)	터파기 : 약 2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5.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100m 이격(2구역)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 보존 ○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형보존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2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5.8.)

- 만장굴과 김녕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암동굴로서 그 통로가 크고 동굴 내부가 잘 보전되어 용암동굴 형성당시의 귀중한 지질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용암동굴임.
-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정화조 시설과 하수관을 매립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터파기 공사는 만장굴 내부의 지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자체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나, 이러한 정화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굴 내부로 오수물이 유입되어 동굴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14.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적벽」 명승지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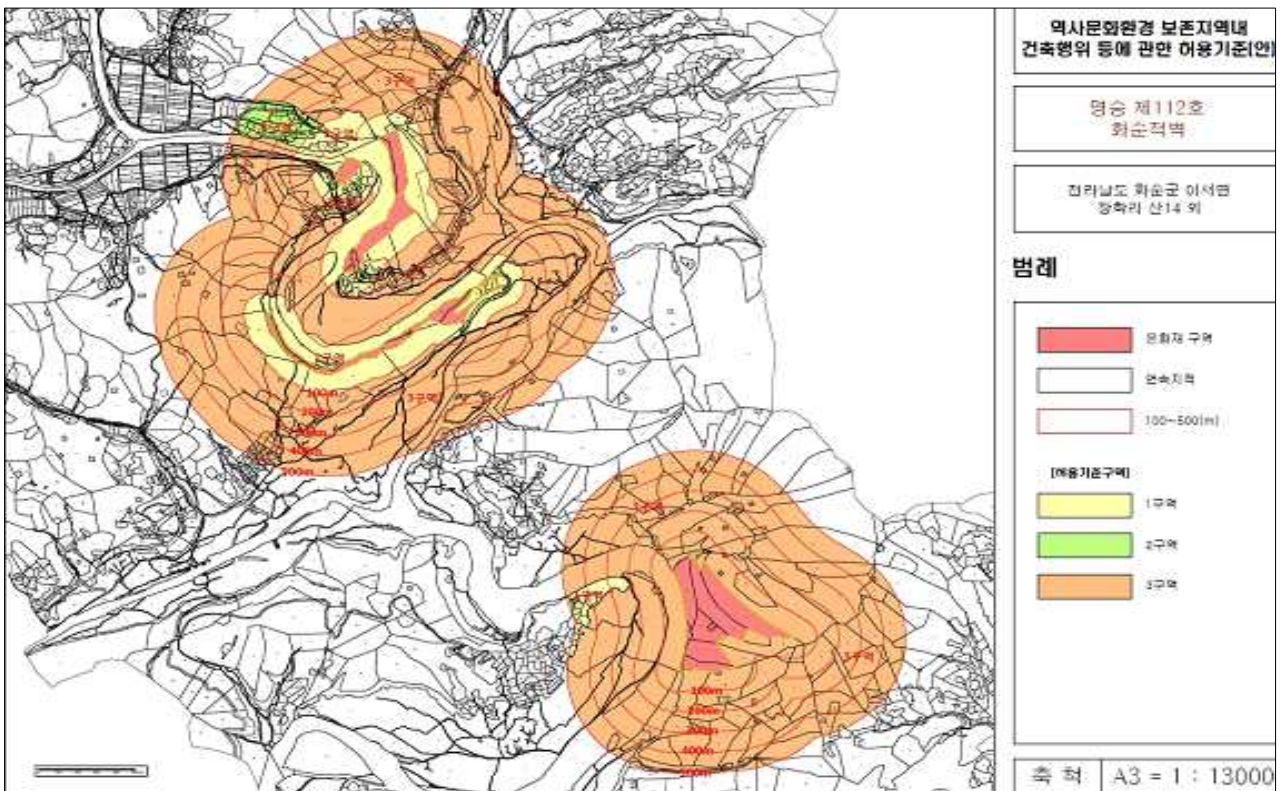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번지 등
 - 지정일 : 2017.2.9.
- (3) 신청내용 :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구분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화순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		

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임야토지형질변경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 화순군에서 제출한 당초(안)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변경(안)에 따른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2018.5.18.>

- 물염적벽, 창랑적벽, 장항(노루목)적벽 등이 포함된 ‘화순 적벽’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지조사 시 제안한 의견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루목(장항)적벽의 구조망점 되는 보산적벽위에 위치한 망향정과 망미정 (여기서 장항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가능)의 서측 인접토지는 망향정과 망미정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적벽 조망의 일체성 확보와 망향정, 망미정의 역사 경관자원의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1구역으로 지정하나 추후 화순적벽의 장소적 경관적 보존가치의 연속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당초 신청(안)에 따른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4.4.>

- 본 안은 명승 112호 ‘화순적벽’ 주변의 문화재 허용기준을 신청한 사업임.
- 화순적벽은 화순 이서면에 동북천 상류인 창랑천에 약 7km에 걸쳐 발달한 절벽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상류에 물염적벽, 창랑적벽, 노루목(장항)적벽, 보산적벽이 있으며,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함.
- 물염정은 높은 언덕위에 위치하여 사방으로의 시계가 오픈되고 있으며, 서측 인접토지는 진입하는 곳으로 북측으로 이어진 물염적벽의 연속성 이루어지는 곳으로 경관적 보존가치가 있으며 향후 개발로 인한 문화재 경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 있음.
- 물염정 서측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인접지는 물염정과 물염적벽의 연속성을 고려해 2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 있음.
- 물염정에서 조망할 경우 남동측 물염적벽과 창랑적벽은 주요 경관 조망점으로 경관적 보존가치가 필요하며 향후 수계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문화재 경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노루목(장항)적벽 주변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등의 법령에 따른 1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지정.
- 노루목(장항)적벽의 구조망점 되는 보산적벽위에 위치한 망향정과 망미정 (여기서 장항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가능)의 서측 인접토지는 망향정과 망미정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적벽 조망의 일체성 확보와 망향정, 망미정의

역사 경과자원의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1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정구역으로 확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적벽 수계주변 개발로 인한 문화재의 경관 피해를 방지하며 당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역사문화경관에 따른 건축 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 개별심의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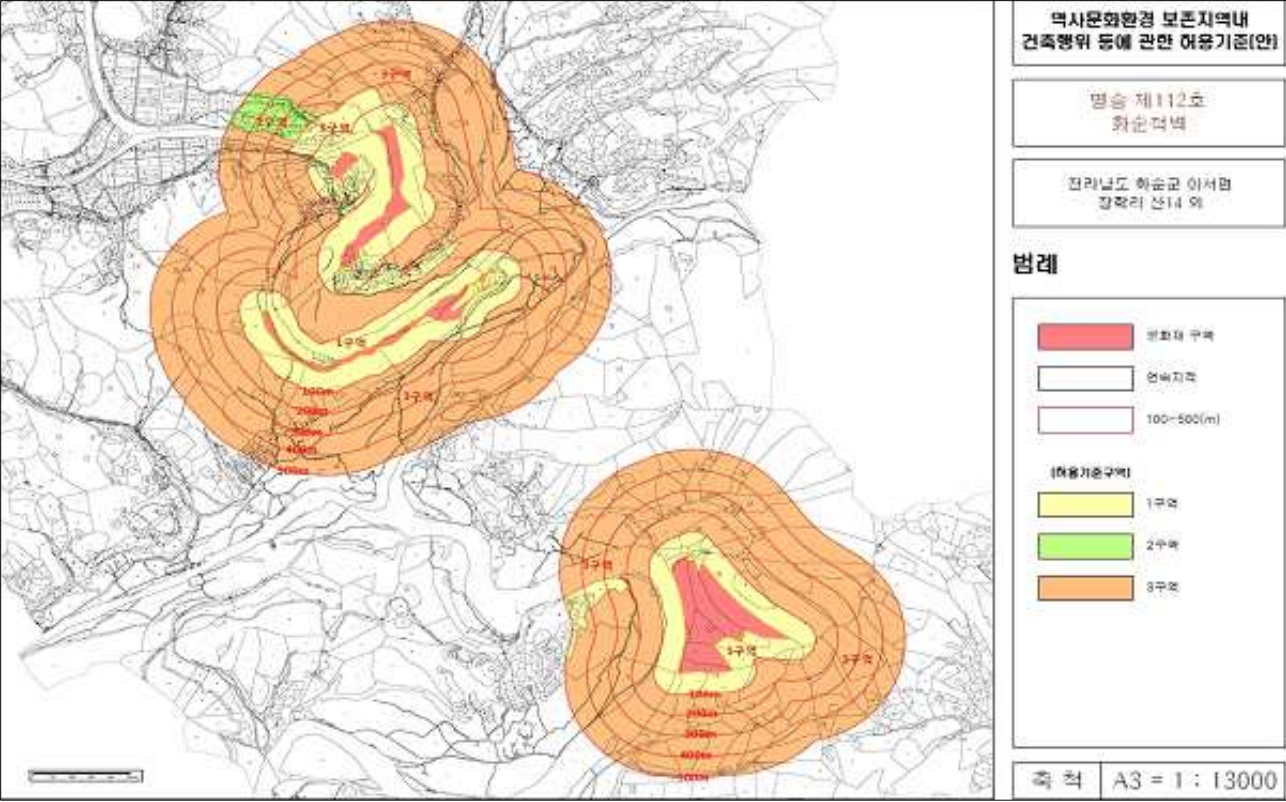
바. 관리단체<*> 당초 신청(안) 및 검토의견서 제출(2018.3.20)**

- 주민의견 청취 기간(2018.1.5. ~ 2018.1.26.(22일간)) : 의견 없음.
- 명승 제112호인 화순 적벽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보산리, 장항리 일대의 동북호를 중심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이 발달된 적색의 물염적벽, 창랑적벽, 장항적벽과 소나무가 어울려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루며, 물염정, 망향정, 송성정 등에 다수의 문헌과 유래에 전해지는 역사문화명승지임.
- 명승지인 화순 적벽을 보호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작성하였는데 화순 적벽 일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없고 대부분은 임야와 수변구역으로 되어있어 1구역에서부터 3구역까지 설정하였음.
- 당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100m이내 구역은 1구역으로 구성하였으며 2구역은 일부 전답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구성하였고 대부분 임야로 된 지역은 3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특히 적벽 주변으로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당초(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화순군 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사.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6명, 조건부가결 4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05-15

15.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동 소재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예고(관보공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재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18.02.2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18.04.06.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관보공고)
 - '18.05.09.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번지 외 1필지
 - 지정일 : 2011.1.13.
- (3) 신청내용

(단위 : m²)

추가 지정 예고	소재지	기 지정 면적			추가지정 신청면적			변경 지정면적		
	제주시 도련1동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2	1,363	1,040.44	1	676	676	3	2,039	1,716.44
의견 제출 사항	소재지	예고 지정 면적			추가지정 신청면적			변경 지정면적		
	제주시 도련1동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3	2,039	1,716.44	1	479	479	3	2,039	2,039

라. 검토의견(*****)

-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는 총 6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2개의 개별 필지에 각각 4주, 2주가 생육하고 있음.
-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예고기간 중 제주도에서 재추가지정 의견을 제출한 구역은 공유지로서 제주도에서 매입 후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정비가 완료된 곳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2244-2 전체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서면 검토 의견 / 2018.5.15., 5.17.)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에서 재배되어 온 제주 굴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어 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 제523호 (지정일 : 2011.01.13.)로 지정되었음.
- 지정 당시 총 굴나무류는 4종류 6그루(4그루, 2그루로 떨어져 위치함)로 개인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제주도에서 매입완료하여 신청한 건으로 천연기념물 제523호 굴나무류의 1보호에 보다 나은 환경이 되리라 판단됨.
- 해당필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건물 등 경관 교란과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일을 사전 차단 필요
- 또한 보호수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고려하고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종합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추가지정예고기간 중 의견

- 토지 소유자 (**)(2018.4.)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은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잘 된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지정된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2018.5.9.)
 -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개인사유지였으며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해있어 부득이 일부만 지정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체를 매입,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완료하였으며, 식생보존과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전체면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해제 및 지정 대상과 범위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도련1동	2244-2	대	479	479	*****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전·후 지번별 면적조서

1) 추가지정 예고 의견제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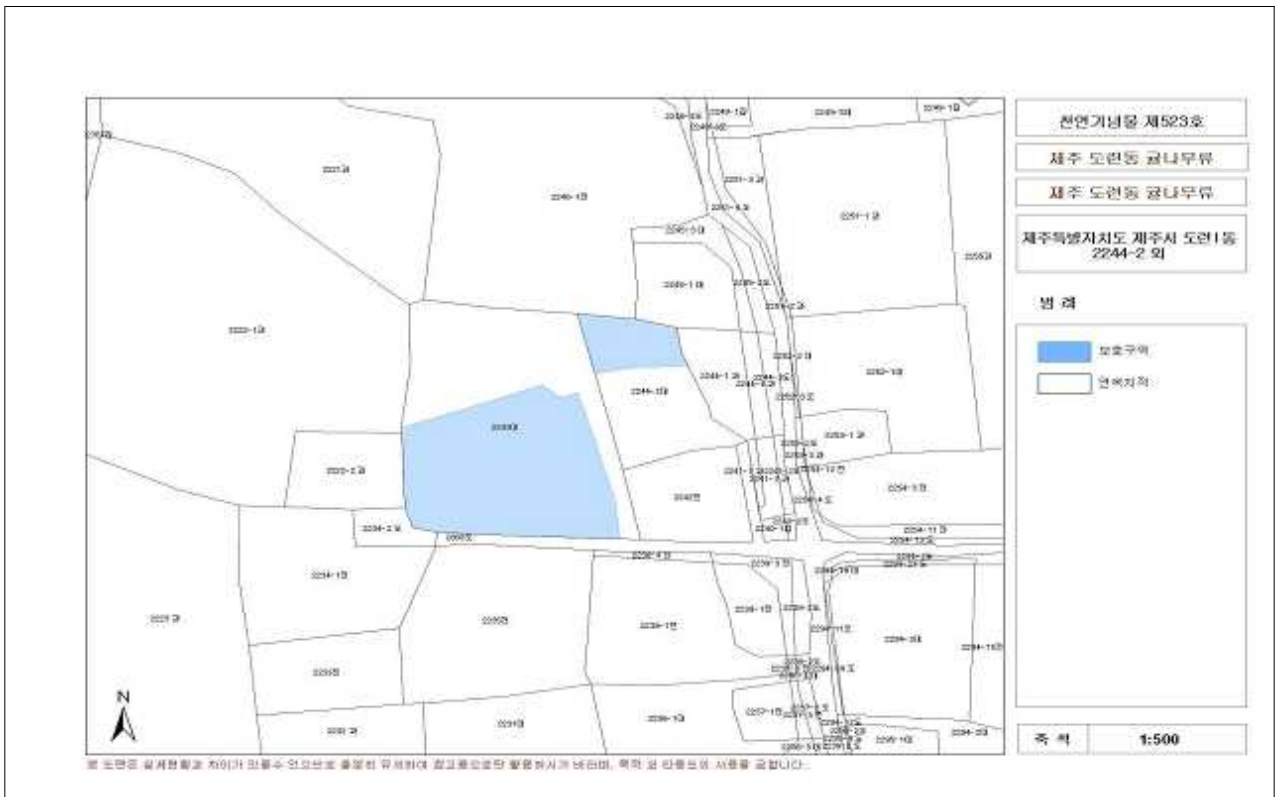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도련1동	2243-1	사적 지	884	884	*****	***
2	제주시 도련1동	2244-2	대지	479	156.44	*****	***
3	제주시 도련1동	2243	대지	676	676	***	***
합계				2,039	1,716.44		

2) 의견반영 후 추가지정 면적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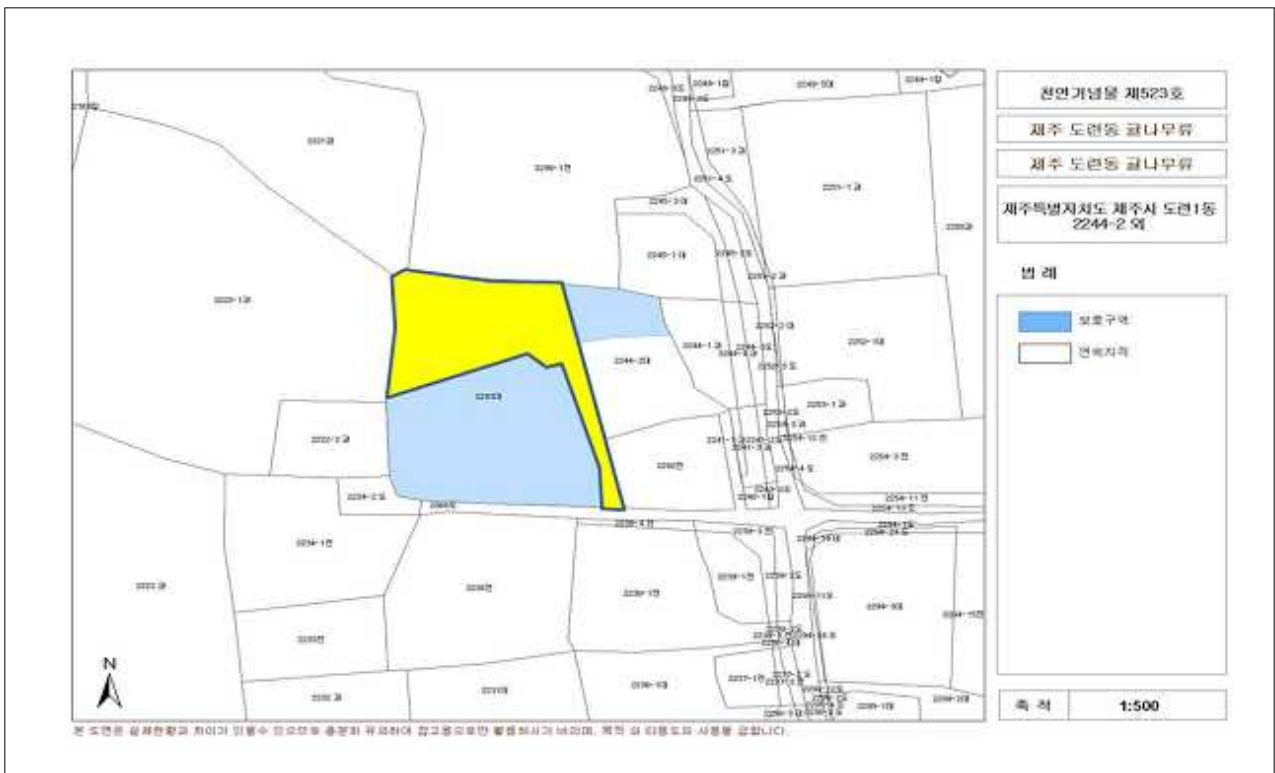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도련1동	2243-1	사적 지	884	884	*****	***
2	제주시 도련1동	2244-2	대지	479	479	*****	***
3	제주시 도련1동	2243	대지	676	676	***	***
합계				2,039	2,039		

붙임 : 위치도 및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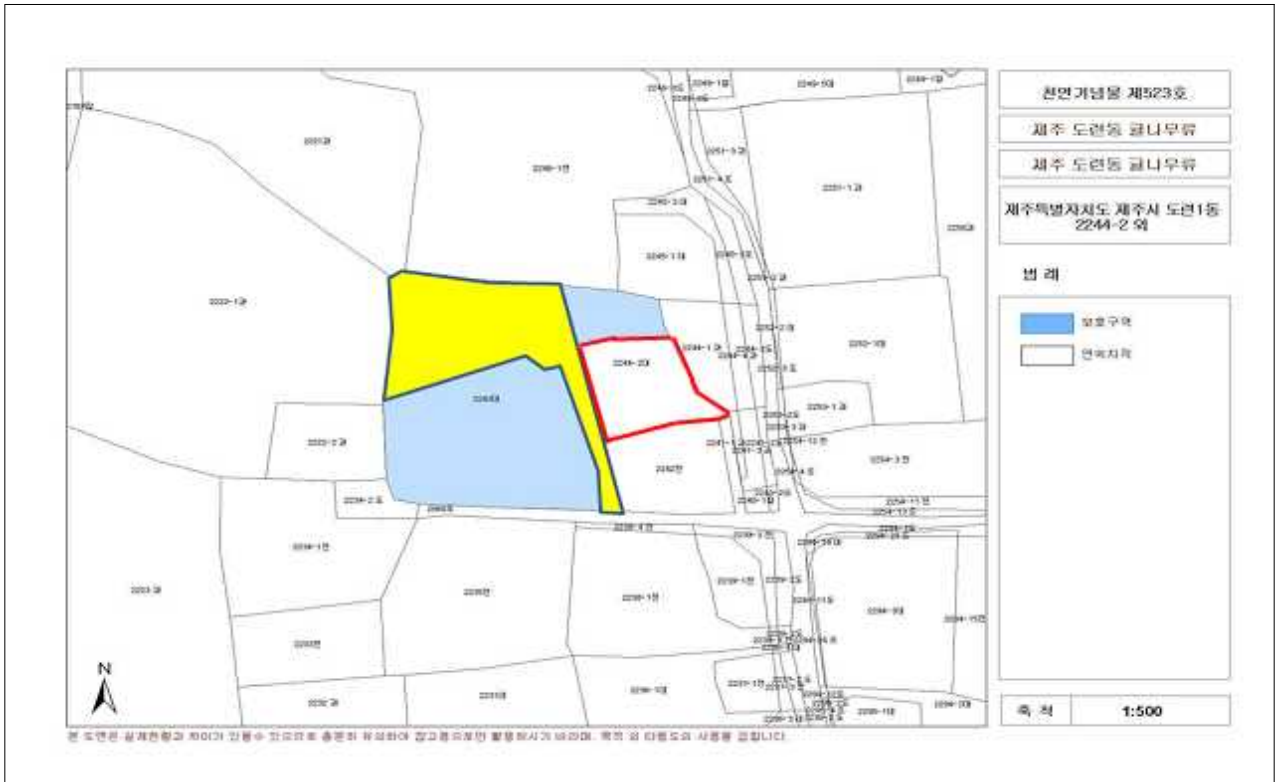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보호구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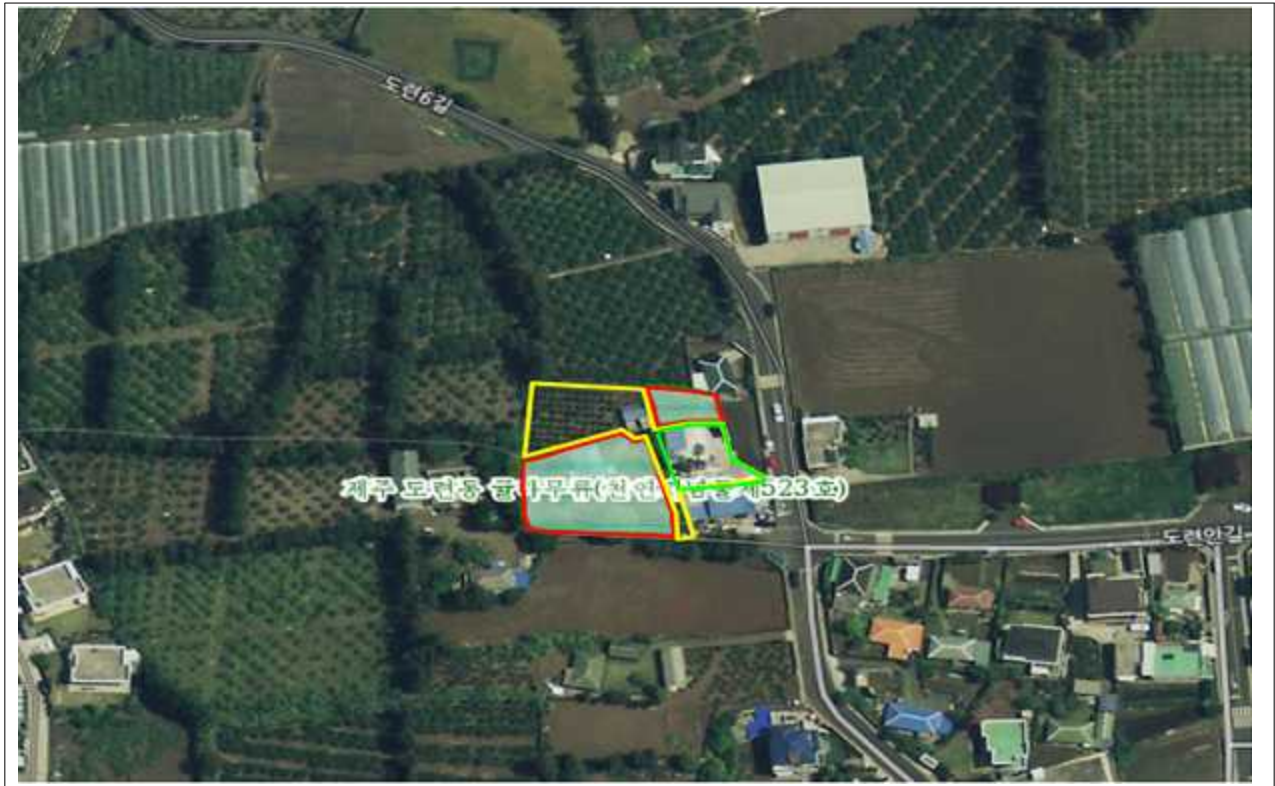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위치도



□ 제주 도련동 끝나무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 안)



□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의견제출 항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안)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추가지정 예고지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추가지정 예고 의견 제출지



사.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05-16

16. 2018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2018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검토기한이 도래한 문화재 등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추가지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 검토기한 : 보호구역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 이내
- 추진실적
 - 2016년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기 136호) 등 21건
 - 2017년 서울 조계사 백송(천기 제9호) 등 89건

다. 보고내용

- (1) 2018년 천연기념물·명승 적정성 검토대상 : 68건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기한 도래 : 청도 대천리 은행나무 등 62건
 - 지자체 보호구역 조정신청 : 원성 성남리 성황림 등 6건
- (2) 검토내용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및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
 -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여건 변화
- (3) 추진방법
 - 검토위원회(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구성, 서면검토 및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적정성 여부 검토

라. 향후 추진일정

- ('18. 6월) 검토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회의 개최 및 조정대상 선정 * 필요 시 세부검토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 (18. 7~9월) 보호구역 조정대상 현지조사
- ('18. 9월) 보호구역 조정대상 문화재위원회 검토
- ('18.10~11월) 관보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8.11~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고시

마. 참고자료 (2018년도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대상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1	제주	서귀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62.12.07.
2	경북	청도	천연기념물 제301호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82.11.09.
3	경북	의령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82.11.09.
4	전남	화순	천연기념물 제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82.11.09.
5	인천	강화	천연기념물 제304호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82.11.09.
6	충북	청주	천연기념물 제305호	청주 공북리 음나무	'82.11.09.
7	경남	김해	천연기념물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82.11.09.
8	부산	수영	천연기념물 제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82.11.09.
9	경북	울진	천연기념물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82.11.09.
10	경북	청송	천연기념물 제313호	청송 장전리 향나무	'82.11.09.
11	경북	안동	천연기념물 제314호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82.11.09.
12	인천	서구	천연기념물 제315호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82.11.09.
13	충남	당진	천연기념물 제317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82.11.09.
14	경북	경주	천연기념물 제318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82.11.09.
15	경남	함안	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82.11.09.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16	충남	부여	천연기념물 제320호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82.11.09.
17	충북	제천	천연기념물 제337호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83.08.23.
18	전남	완도	천연기념물 제338호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83.08.23.
19	경남	통영	천연기념물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84.11.19.
20	강원	정선	천연기념물 제348호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86.04.17.
21	강원	영월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88.04.30.
22	강원	속초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88.04.30.
23	충남	보은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88.04.30.
24	전남	고창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88.04.30.
25	전북	전주	천연기념물 제355호	전주 삼천동 곰솔	'88.04.30.
26	전남	장흥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88.04.30.
27	경북	구미	천연기념물 제357호	구미 독동리 반송	'88.04.30.
28	경남	함양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88.04.30.
29	경남	의령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88.04.30.
30	강원	삼척	천연기념물 제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89.09.16.
31	충남	금산	천연기념물 제365호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90.08.02.
32	전북	고창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91.11.27.
33	제주	서귀포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93.08.19.
34	제주	서귀포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93.08.19.
35	경기	이천	천연기념물 제381호	이천 도립리 반룡송	'96.12.30.
36	충북	괴산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96.12.30.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37	충북	괴산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96.12.30.
38	전남	강진	천연기념물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97.12.30.
39	전북	진안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97.12.30.
40	전북	장수	천연기념물 제39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98.12.23.
41	전북	장수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98.12.23.
42	충남	천안	천연기념물 제398호	천안 광덕사 은행나무	'98.12.23.
43	경북	영양	천연기념물 제399호	영양 답속리 만지송	'98.12.23.
44	경북	예천	천연기념물 제400호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98.12.23.
45	경북	청송	천연기념물 제401호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98.12.23.
46	경북	청도	천연기념물 제402호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98.12.23.
47	경남	함양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99.04.06.
48	경남	함양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99.04.06.
49	경북	울진	천연기념물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99.04.06.
50	경북	울진	천연기념물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99.04.06.
51	경남	거창	천연기념물 제410호	거창 당산리 당송	'99.04.06.
52	전북	남원	천연기념물 제424호	지리산천년송	'00.10.13.
53	경북	문경	천연기념물 제426호	문경 대하리 소나무	'00.10.13.
54	충남	천안	천연기념물 제427호	천안 양령리 향나무	'00.12.08.
55	전남	해남	천연기념물 제430호	해남 성내리 수성송	'01.09.11.
56	강원	정선	천연기념물 제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	'02.06.29.
57	인천	강화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09.09.16.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58	전북	고창	천연기념물 제503호	고창 교천리 멀구슬나무	'09.09.16.
59	경기	화성	천연기념물 제504호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09.09.16.
60	전남	나주	천연기념물 제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09.12.24.
61	전남	나주	천연기념물 제516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09.12.24.
62	전남	진도군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00.03.14.
기간도래 : 62건					
63	강원	원주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주 원성 성남리 성황림	'63.12.03.
64	제주	제주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02.02.02.
65	경북	안동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66.01.13.
66	부산	진구	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80.10.27.
67	전남	장성군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07.08.09.
68	제주	제주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62.01.31.
지자체 신청 대상 : 6건					

바.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53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독수리 등 전시 및 관람 ○ 허가사항 : 독수리 등 사육 ○ 허가개체 : 독수리 등 4종 6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수리 2, 참수리 2, 흰꼬리수리 1, 재두루미 1 ○ 사육장소 : 경성대 조류관(부산광역시 남구) ○ 허가기간 : 2018.4.26 ~ 2018.6.25 (사육허가기간 : ~ 2023.4.25)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홍보 입간판 정비 - 사육개체 관리(재두루미 분리사육 등) - 사육케이지 시설물 정비(케이지 능형망과 철근 도포 페인트 제거, 독수리 사육케이지 차양막, 천막 철거 등) - 제출된 사육계획서대로 시행(사육대장 등 구비)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남생이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 ○ 허가사항 : 포획 및 시료채취 후 방사 ○ 개체수 : 최대 4개체 ○ 포획지역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일원 ○ 포획시기 : 허가일 ~ 2018.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혈액체혈을 이용한 유전자 연구 ○ 허가사항 : 올빼미 혈액검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수 : 10개체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개체군 생태연구 및 번식지간 유전자 다양성 분석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포획 및 가락지부착, 혈액채취 후 방사 - 동지조사(동지 주변 소형 깃대 설치) ○ 개체수 : 10개체 ○ 허가장소 : 충남 서천군 유부도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8.8.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개체군 생태연구 및 번식지간 유전자 다양성 분석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포획 및 가락지부착, 혈액채취 후 방사 - 동지조사(동지 주변 소형 깃대 설치) ○ 개체수 : 10개체 ○ 허가장소 : 전남 신안군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8.8.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번식 ○ 허가사항 : 수달 사육 ○ 개체수 : 1개체 ○ 입수경위 : '18.3.10 대전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어린개체로 자연방사 불가 ○ 허가기간 : 2018.5.8 ~ 2023.5.7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허가사항 : 새매 박제 ○ 개체수 : 1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일련번호 : 2018-충남-7 ○ 보관장소 : 서산버드랜드(충남 서산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황새 부상개체 이송·사육 및 자연번식 황새의 장기 모니터링 ○ 허가사항 : 부상개체 사육, 야생 번식개체 포획 및 가락지 부착후 방사 ○ 개체수 : 6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체('17.8.12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방사불가 개체) - 5개체(야생번식 개체로 가락지부착 후 방사) ○ 포획지역 : 예산군 시목리 등지탑(5개체) ○ 허가기간 : 2018.5.9 ~ 2023.5.8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허가사항 : 박제 ○ 개체수 : 1개체 - 박제일련번호 : 2018-서울-2 ○ 보관장소 : 서울시 송파구청사(서울 송파구)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저어새의 분포·서식실태 조사 및 유전자 다양성 연구 ○ 허가사항 : 저어새 육안조사 및 분변채취 ○ 분변채취 : 20개체 ○ 허가지역 : 강화도 비도, 석도 / 응진군 구지도, 서만도 ○ 포획시기 : 허가일 ~ 2018.6.15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허가사항 : 수달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허가사항 : 큰소쩍새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허가사항 : 올빼미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부검 후 소각처리 ○ 허가사항 : 산양 폐사체 소각 ○ 개체수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조류 유전자 다양성 연구 ○ 허가사항 : 유전자 시료채취(혈액 1ml이하) 및 DNA분석 ○ 개체수 : 큰고니 등 3종 10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고니 1, 흑고니 1, 독수리 8)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8.6.30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허가사항 : 박제 및 골격제작 ○ 개체수 : 3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일련번호 : 2018-충남-8~10 ○ 보관장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및 종복원 · 쥐방울 덩굴식재 식재 A=8,000m²(400본), 꼬리명주나비 유충 및 성충 이식 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 허가기간 : 2018.4.26 ~ 2018.12.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야생조류 육안조사 및 분변채취 · 서식환경, 주요 위협요인 등 육안관찰 및 분변채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리 산89(비도), 주문1리(석도) - 허가기간 : 2018.5.1 ~ 2018.6.15 - 허가조건 : 조사결과는 강화군과 문화재청에 통보해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89호 영광 칠산도 팽이갈매기·노랑부리 백로·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야생조류 육안조사 및 분변채취 · 서식환경, 주요 위협요인 등 육안관찰 및 분변채취 - 사업위치 : 영광 칠산도 팽이갈매기·노랑부리 백로·저어새 번식지 - 허가기간 : 2018.5.1 ~ 2018.6.15 - 허가조건 : 조사결과는 영광군과 문화재청에 통보해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개인 사무실 신축 · 가설건축물 신축(면적 : 13.52m², 높이 4.2m)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2-118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 허가기간 : 2018.5.3 ~ 2018.8.31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시추조사 2개소(76mm) - 사업위치 : 강서구 대저2동 4764-12, 4765 - 허가기간 : 2018.5.3 ~ 2018.9.30	<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채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발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성토 · 대지면적·성토면적 : 11,130㎡, 높이 4m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54-8 - 허가기간 : 2018.5.3 ~ 2018.12.31 - 허가조건 : 매립시 수환경 훼손 최소 방안 마련 후 관할기관인 승인 후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지목변경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에 따른 지목 변경(임야를 전(田)으로 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놀차동 산24-1번지 (허용기준 1~2구역) - 허가기간 : 2018.5.3 ~ 2018.5.30 - 허가조건 : 수질오염 방지조치 후 실시. 소음·진동 공정은 10.31.이전에 완료할 것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청계 야외 시험교습장 설치 운영 · 노지식(10m×5m×2m) 1개소, 가두리형 통밭식 (10m×10m×2m) 1개소 - 사업위치 : 낙동강 하구(신호동 194번지 지선일대) 일원 - 허가기간 : 2018.5.9 ~ 2018.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27호	○ 신청인 : ***, *** ○ 허가사항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레저선박 등 접안 부잔교 설치 운영 · 플라스틱 부교 : 5m×15m, 부잔교(철재) : 1.2×12m -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33-1번지 인근 수역 - 허가기간 : 2018.5.14 ~ 2020.5.13(2년간) - 허가조건 : 운영은 아비의 도래 및 월동시기를 제외한 4월~11월로 한정함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상레저기구 접안시설(부잔교) 설치(5×10m) -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34-5번지 인근 수역 - 허가기간 : 2018.7.1 ~ 2018.8.31 - 허가조건 : 운영은 아비의 도래 및 월동시기를 제외한 4월~11월로 한정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3064-2, 대저2동 5999-1 - 허가기간 : 2018.5.11 ~ 2018.9.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을숙도 풋살경기장 조성사업(1,000㎡) · 인조잔디교체, 웬스 보수정비, 시설안내판(1,500×1,100) 1개 설치, 옥외용 벤치(2,700×320×450) 6개, 퍼걸러(5,000×3,200×3,000) 2개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번지 11호 - 허가기간 : 2018.7.1 ~ 2018.10.31 - 허가조건 : 문화재구역이므로 퍼걸러(2개)는 목재로 설치하되 등나무, 담쟁이, 당굴장미 등을 올려 친환경적으로 조성토록 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8호 울릉 통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내 낙석방지망 설치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향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낙석방지망 설치 · 면적 : 300㎡(가로 10m, 세로 30m) ○ 허가기간 : 2018.5.3 ~ 2018.8.31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고양 송포 백송 주변 건물 내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54-3번지 (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도장시설(4,350W*7,150L*2,740H), 분리시설(4,350W*7,150L*2,740H) ○ 허가기간 : 2018.5.15 ~ 2019.5.14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439번지 1호(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3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36㎡ · 건축면적/연면적 : 71.70㎡/136.77㎡(1층 71.70㎡/2층 65.07㎡)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1동 평지붕 · 최고높이 : 6.30m(지상 2층) ○ 허가기간 : 2018.04.18 ~ 2019.04.17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해취약지 방재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산 66번지 8호(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600m) - 사업내용 : 수해취약지 방재시설 공사 · 집수정(침투형) 설치 : 5개소 · 돌수로 : 543.2m 관수로 : 267.6m(VR관 U형측구, 토사측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포장 : 1,376.6㎡(콘크리트+관석 591.1㎡, 콘크리트포장 515.6㎡, 박석 61.5㎡, 계단박석 2080.4㎡) · 제주경계석 설치 329.5m, 돌담설치 47.9m, 칠성각 석축복구 50.0㎡ <p>○ 허가기간 : 2018.04.23.~2019.04.22.</p>	
	<p>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응전</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선운사 내원암 요사채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56번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거리 200m) -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 · 대지면적 : 1,666㎡ · 건축면적/연면적 : 123.65㎡ · 구조/규모 : 전통한옥구조/지상 1층 · 건물 최고높이 6.63m · 외장마감 : 한식벽체, 한식기와지붕, 한식창호 <p>○ 허가기간 : 2018.04.26 ~ 2019.04.25</p>	<허가>
	<p>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 사업위치 : 독도 서도 남서측 해역(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50m) - 사업내용 : 총 면적 약 40,875㎡ · 갯녹음 유발생물(성게) 제거 · 석회조류 제거(갯닭이) · 해조류 이식 및 성게 천적생물(돌돔) 방류 <p>○ 허가기간 : 2018.05.18 ~ 2018.11.30</p>	<허가>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및 생장쇠퇴에 따른 식생복원 연구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영남동 산1-1임(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0m)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수상나무 식재 1,000주 · 7년생 실생묘(W1.0×H0.15) 한라산연구부 양묘하우스 자체증식 · 식재용기(0.33m×0.33m×0.13m)129개 (소재 : 아자섬유100%) · 식재터파기 없이 용기 채 현장 배치(용기 자연 부속 유도) <p>○ 허가기간 : 2018.05.18 ~ 2018.12.31</p>	
	<p>천연기념물 제390호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공업용수관로매설 - 사업내용 : 공업용수관로매설(관경 600mm) L=888m · 토공 : 터파기 3,601m³, 되메우기 2,665m³ · 관로공 : 닥타일주철관(D600) L=888m · 구조물공 : 제수변실(6.0x2.5x3.5) 1개소, 유량계실(6.0x2.5x3.5) 1개소 · 포장공 : 아스콘포장복구(B=3.5) A=3,108m² · 부대공 : 메쉬웬스(W2.0xH2,0) L=60m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615-17 (문화재구역 내,외(1구역)) - 허가기간 : 2018.4.25 ~ 2019.2.28 - 허가조건 · 문화재구역 내에서 터파기 공사를 할 때에는 화석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며, 화석 발견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할 것. 	<p><조건부 허가></p>
	<p>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농업용수관 교체공사 - 사업내용 : 농업용수관로 교체 (PE관, D100mm, 길이 212.1m)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43 (2구역,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35m 이격) - 허가기간 : 2018.5.11 ~ 2018.12.31 - 허가조건 · 진동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터파기 공사시 고고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p><조건부 허가></p>
	<p>천연기념물</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조건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고산1리(한장동)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 설치 : 2개소 (U형 측구, 규격 0.5*0.5, 길이 665m) · 농로 포장 : 1개소(길이 257m)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31-15 (2구역,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90m 이격) - 허가기간 : 2018.5.14 ~ 2018.12.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 설치 공사시 관계 전문가의 입회 하에 시행하고, 바다로 유출되는 배출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농로 재포장을 위하여 콘크리트포장 기층 시공시 추가 터파기를 지양하고 기존의 아스팔트포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기층을 보강하여 시공할 것.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00부대 작전도로 가드레일 설치 -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2동 산29번지 3호 (임야,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군작전용 도로 보호가드 철재레일 설치 (L=30m, H=0.9m) ○ 허가기간 : 2018.5.1 ~ 2018.12.31 	<허가>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부산 오륙도 주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 사업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950-1번지 (문화재로부터 330m 이격, 2구역) - 사업내용 : 동일 지면에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여 2동에서 3동으로 증축됨 - 대지면적 2,666㎡, 철근콘크리트조 (변경없음) - 건축면적 (당초)292.13㎡ → (변경)470.25㎡ (증) 178.12㎡ - 연면적 (당초)339.43㎡ → (변경)541.46㎡ (증) 202.03㎡ - 건축높이 (당초)7.4m → (변경)9.9m (증) 2.5m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당초) 관광휴게시설(관광안내소) →(변경) 관광휴게시설(관광안내소),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금회 증축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외관 : 투명유리 벽면, 노출콘크리트 - 옥외장비: 바다(포장 화산석) 33421m², 자연석 32개, 약새 8m580본 ○ 허가기간 : 2018.4.5 ~ 2018.12.31 ○ 허가조건 : 금회 증축되는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외관의 노출콘크리트는 건축관련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 건축물과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치할 것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검표소 비가림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77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증가(당초) 525m² →(변경) 917m²) - 비가림 시설 : 면적 3.92m²(폭1.45m×길이 2.7m×두께 3mm), 폴리카보네이트, - 기둥 : 높이 2.66~4.55m 직경100mm,50mm(스텐레스파이프) ○ 허가기간 : 2018.4.3 ~ 2018.12.31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태평교 재설치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 1번지 1호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교 철거(슬래브교) : 폭 4m× 길이 18.4m(높이 2.0m) · 임시도로설치(잡석) 및 철거 : 폭 5m× 길이 55m, 흙관(3개, 직경 1m, 길이 12.5m) · 태평교 개축 : 폭 6m× 길이 16.5m(높이 2.2m) - 칼라아스콘포장 A=191.2m²(교량102.4m², 교량접속부 전 48.1m², 후 40.7m²) - 기존 수목 이식 A=140.0m² 총15주(단풍나무 5주,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벚나무 2주, 전나무 8주) ○ 허가기간 : 2018.5.1 ~ 2018.12.31 ○ 허가조건 - 중간주의 최대폭(320mm)과 난간주의 최대폭(260mm)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중간주폭을 난간주폭과 같도록 시공하도록 함 -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 시 저수지의 어류 및 생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 후 철거 시 저수지 바닥에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상복구 함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세심정 ~ 법주사)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탈골암 주변: 낙석방지망(갈색PVC코팅, L=737m, A=1,296m) 낙석방지책(강관,갈색도색마감, L=50m H=1.85m) · 법주사~세심정 : 낙석방지망(갈색PVC코팅, L=290m, A=650m) 낙석방지책(강관,갈색도색마감, L=30m H=1.85m) ○ 허가기간 : 2018.5.14 ~ 2018.12.31 ○ 허가조건 :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낙석방지 시설은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조치 후 시공하고, 기존 지반이나 수목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할 것	<조건부 허가>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58번지 1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2층,9.8m) 신축 (건물) 대지면적 : 1,485㎡, 건축면적 162.41㎡, 연면적: 190.54㎡,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잔디블럭포장) 진입로 385m ² , 주차장 23m ² (식재) 877m ² (제주 고유수종 식재) ○ 허가기간 : 2018.5.1 ~ 2019.4.30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수달 사육 1) 기허가 내용 · 신청목적 : 교육 및 전시 · 허가사항 : 수달 사육 · 개체수 : 2개체 · 허가기간 : 2014.11.24~2019.11.23 2) 변경허가내용 · 신청목적 : 교육 및 전시 · 허가사항 : 수달 사육(증식 2개체) · 개체수 : 4개체 · 허가기간 : 2018.4.27 ~ 2023.4.26 * 기존 허가개체 및 증식개체 통합관리를 위해 사육기간 조정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원앙 사육 1) 기허가 내용 · 신청목적 : 교육 및 전시 · 허가사항 : 원앙 사육 · 개체수 : 34개체 · 허가기간 : 2016.8.4 ~ 2021.8.3 2) 변경허가내용 · 신청목적 : 교육 및 전시 · 허가사항 : 원앙 사육(증식 21개체) · 개체수 : 55개체 · 허가기간 : 2018.4.27 ~ 2023.4.26 * 기존 허가개체 및 증식개체 통합관리를 위해 사육기간 조정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보호각 및 전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산2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시관, 수장고, 보호각 등 신축 - 사업기간 : (당초) 2015.7.27 ~ 2017.4.30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변경) 2015.7.27 ~ 2018.12.30 - 변경사유 : 화석산지 내 보호각 및 전시시설 시설물 이관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놀이시설 설치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레리 74번지 (문화재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 놀이시설 등 설치 1) 기허가 내용 · 조합놀이대 설치 1개소(4.8m(L)×9.0m(W)×4.3m(H)) · 시소 설치 1개소(3.62m(L)×1.23m(W)×0.813m(H)) 2) 변경허가 내용 · 퍼즐러 설치 추가 1개소(6.7m×6.7m×4.5m) · 이외 사업내용은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 ○ 허가기간 연장 1) 당초 : 2017.11.3 ~ 2018.11.2 2) 변경 : 2017.11.3 ~ 2018.11.2(전과 동일)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행 1) 기허가 내용 가) 잠수정 운항 · 운항지역 : 수심 약20m 잠항 후 반경 50m 이내 운항 · 운항시간 : (5~10월) 08~19시, (11~익년4월) 09시~17시 나) 운항기간 : 2016.7.1 ~ 2018.6.30 2) 변경허가 내용 · 잠수정 운항내용은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 ○ 허가기간 연장 1) 당초 : 2016.7.1~2018.6.30 2) 변경 : 2018.7.1~2020.6.30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성산읍 일출로 지중화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번지 16호 등 (문화재구역 연접) - 사업내용 : 일출로 가공전선 지중화 공사 1) 기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화 굴착 : 814m · 맨홀 21식 설치 · 지상개폐기 2대 · 지상변압기 7대 설치(1대 추가 설치) <li style="padding-left: 40px;">※지상 기기 설치 장소 변경 2) 변경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일출봉 주차장 내 지상기기 4대 설치 위치 변경 · (당초) 자전거거치대 좌·우 2대설치 · (변경) 자전거거치대 장소 지상기기 4대설치 - 자전거거치대 이설 · (당초) 성산리 114-3 · (변경) 성산리 102-3 제주 은행CD기 부근 - 지상기기 3대 설치 위치변경 · (당초) 성산리 298-19부근 공유수면 · (변경) 성산리 260-1번지 부근 도로 ○ 허가기간 : 2017.2.17 ~ 2018.10.31(변동 없음)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변경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영광 법성진 숲쟁이 주변 진내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78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이격/허용기준 4,5구역) <table border="1" data-bbox="496 1697 1299 199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th> <th>공중</th> <th>당초</th> <th>변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사업면적</td> <td>사면보강 및 정비</td> <td></td> <td>4,200㎡</td> <td>4,200㎡</td>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변경없음</td> </tr> <tr> <td>가옥과 시설물철거</td> <td></td> <td>8,117㎡</td> <td>8,117㎡</td> </tr> <tr> <td>사면보강 제외</td> <td></td> <td>3,917㎡</td> <td>3,917㎡</td> </tr> </tbody> </table>			공중	당초	변경	증감	사업면적	사면보강 및 정비		4,200㎡	4,200㎡	변경없음	가옥과 시설물철거		8,117㎡	8,117㎡	사면보강 제외		3,917㎡	3,917㎡	<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공중	당초	변경	증감																		
사업면적	사면보강 및 정비		4,200㎡	4,200㎡	변경없음																		
	가옥과 시설물철거		8,117㎡	8,117㎡																			
	사면보강 제외		3,917㎡	3,917㎡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토공	각기	990m ³	1,238m ³	증 248m ³		
		배수공	산마루측구	L=70m	L=61m	(감)L=9m		
			U형측구	L=26m	L=26m	변경없음		
			집수정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사면보호공	녹생토	1,550m ²	155m ²	(감)1,395m ²		
			씨드매트	없음	1,318m ²	(증)1,318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허가기간 : 2018.1.29 ~ 2020.12.31(변경없음) ○ 허가조건 : 사면보호공(녹생토 거적덮기)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향토 초화류가 식재 될 수 있도록 함 						
	<p>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남해 지족해협 죽방림 내 체험데크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 사업내용 : 죽방림 체험데크 설치(L=159m, B=2m) - 한시적 허용기간(허가일로부터 5년)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 변경허가내용 :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17.7.28 ~ 2018.5.30 - (변경) 2017.7.28 ~ 2018.12.31 ○ 허가조건 : 체험데크 한시적 활용기간 5년 동안 관람객의 교육, 홍보,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해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활용기간 완료 후 제출할 것 					<p><허가사항 변경허가></p>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